

啓辭에 대한 考察

-『承政院日記』를 중심으로-

李康旭*

目 次

I. 머리말	2. 非兒房啓辭
II. 啓辭의 유래	V. 啓辭의 처리 절차
III. 啓辭의 형식	1. 啓辭의 작성 및 전달
1. 官署志와 元文書 등에 나타난 啓辭의 문서 형식	2. 啓辭의 入啓
2.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啓辭의 기록 형식	3. 啓辭의 裁決
IV. 啓辭의 분류	4. 啓辭의 결과 통보 및 보관
1. 兒房啓辭	VI. 맺음말

요약

□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承政院에서 君臣의 말과 글, 動靜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啓辭는 中央官府文書의 일종으로, 中央官府의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 요청, 문의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조선 전기의 實錄에서는 啓辭의 의미가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口傳啓辭’를 내포한 의미로 사용되다가, 中宗 이후에는 이러한 의미 이외에도 啓辭에서 草記, 兒房啓辭, 非兒房啓辭 등 특정 문서로써의 의미가 파생되었

*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 (<http://www.eundae.com>)

다. 그중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啓辭는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가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啓辭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이른바 조선시대 4대 官撰史料의 대부분은 中央官府文書와 國王文書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官撰史料를 이해하고 정리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啓辭式은 正祖代에 편찬된 □奎章閣志□와 憲宗代에 편찬된 □銀臺便攷□에 나타난다. □奎章閣志□에 규정되어 있는 啓辭式을 정리하면, 奎章閣의 啓辭는 閣臣이 行草로 직접 작성하고, 서두는 각신이 아뢰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본문의 마무리는 요청하는 내용이면 ‘何如’, 보고하는 내용이면 ‘敢啓’, 묻는 내용이면 ‘敢稟’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啓辭의 원문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형식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문서를 올린 사람의 職名과 姓名이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啓辭의 말미에는 草記와 마찬가지로 연월일과 官銜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인장도 찍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啓辭의 기록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官司의 啓辭 앞에는 草記와 달리 入啓한 承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둘째, 啓辭를 올린 주체가 官司名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官員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다. 셋째, 啓辭를 올린 주체의 말[言]이나 뜻[意]을 승지가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된 草記와 달리 啓辭를 올리는 주체가 직접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넷째, 啓辭의 말미는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면 ‘之意敢啓’, 청하는 내용이면 ‘請’이나 ‘何如’, 묻는 내용이면 ‘何以爲之(敢稟)’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섯째, 啓辭에 대한 임금의 처분은 전교, 하교, 비답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承政院日記□에 기록된 관부문서 중 啓辭는 草記와 함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며, 啓辭의 대부분은 非提調衙門의 非兒房啓辭가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啓辭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로 분류하였다. 兒房啓辭는 都提調가 없는 衙門에서 首長이 직접 승정원의 兒房에 나아가 임금에게 올리는 啓辭를 말한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보면, 提調가 首長인 아문 이외의 衙門에서도 兒房啓辭를 올렸고, 官司에서 뿐만 아니라 權設官職인 獻官과 使臣, 宗親 등 개인의 이름으로도 兒房啓辭를 올렸다. 그러나 늦어도 正祖 때가 되면 草記를 올리는 아문에서는 兒房啓辭를 올리지 않게 되었으며, 兒房啓辭는 사실상 提調衙門만이 올리는 문서가 되었다. 非兒房啓辭는 衙門의 首長이 承政院의 兒房에 직접 나아가지 않고 승지와 承傳色을 청하여 本衙門에서 직접 올리는 啓辭를 말한다. □承政院日記□를 보면 특정 官司의 경우에는 草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啓辭를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衙門이 承政院, 藥房, 兩司이다. 그 외에 吏批와 兵批에서도 주로 啓辭를 사용하였다. 이들이 올린 啓辭는 모두 非兒房啓辭이다. 特定啓辭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啓辭로, 非兒房啓辭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特定啓辭로는 庭請啓辭, 賓廳啓辭, 院議啓辭 등이 있다.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의 차이는 啓辭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

다. 非兒房啓辭는 원칙적으로 해당 아문에서 啓辭의 草本을 작성하여 승정원의 承旨와 注書에게 전해주고 주서가 正書한 뒤에 승전색을 청하여 入啓하였다. 兒房啓辭는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非兒房啓辭와 달리 本衙門에서 곧바로 正本을 작성하여 首長이 직접 承政院의 兒房으로 나아가서 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정원에 전달된 각 아문의 啓辭는 세 가지 처분 중 한 가지 처분을 받았다. 즉 入啓, 留院, 還給이 그것이다. 임금에게 入啓된 啓辭의 처리도 세 가지 처분 중 한 가지의 처분을 받았다. 즉 裁決, 留中, 還給이 그것이다. 그중 留院, 留中, 還給은 임금이 啓辭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啓辭에 대해 내린 임금의 批答은 승전색을 시켜 承政院에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승전색이 批答을 가지고 나오면 승지들은 나가서 승전색을 맞이하였다. 각 官司의 啓辭는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고 승전색을 통해 批答을 전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兩司의 啓辭에 대해 내린 임금의 批答은 승지가 해당 官司에 가서 전해주었으며, 원래의 啓辭는 도로 들여와서 新啓는 傳敎軸에 붙여 보관하였다.

주제어 : 啓辭 / 兒房啓辭 / 非兒房啓辭 / 都提調衙門 / 提調衙門 / 非提調衙門 / 入啓 / 留院 / 還給 / 裁決 / 留中 / 草記

I. 머리말

□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承政院에서 君臣의 말과 글, 動靜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중 軍신의 말이란 임금과 신하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軍신의 말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므로, 이를 임금의 말과 신하의 말로 분리하기가 어렵다. 軍신의 글이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軍신의 글은 서로 다른 시간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므로, 이를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문서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로 분리할 수가 있다. 軍신의 동정이란 임금의 동정과 신하의 동정을 기록한 것으로, 軍신의 말이나 글이 대부분 인용형식으로 기록된 것과는 달리 軍신의 동정은 대부분 서술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啓辭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문서는 國王文書, 王室文書, 官府文書, 私人文書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¹⁾ 그중 官府文書는 다시 中央官府文書와 地方官府文書로 나눌 수가 있다. 文書로써의 啓辭는 中央官府文書의 일종으로, 中央官府의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 요청, 문의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²⁾ 啓辭가 처음부터 문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啓辭의 원래 의미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을 가리켰다. 이처럼 말의 의미로 사용되던 啓辭가 문서로 발전한 것은 中宗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³⁾ □승정원일기□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린 문서가 다수 기록되어 있는데, 啓辭는 草記와 함께 신하가 임금에게 올린 문서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문서의 일종인 啓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연구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啓辭의 概念이나 書式에 대해서조차도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최승희가 □韓國古文書研究□에서 官府文書 중 ‘筭子’ 항목의 뒷부분에 ‘啓(文)’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啓辭’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⁴⁾ 최승희는 ‘啓(文)’에 대해 “臣下가 政務에

1) 최승희는 조선시대의 문서를 國王文書, 王室(宮房)文書, 官府文書, 私人文書, 寺社文書, 書院(鄉校)文書, 道觀文書, 奉神佛文書 등으로 분류하였다. 최승희, 증보판 □韓國古文書研究□(지식산업사, 1995), 45~48쪽 참조.

2) 啓辭의 서두는 啓辭를 올리는 관원의 이름으로 시작되므로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啓辭를 올린 신하는 개인 자격으로 문서를 올렸다고보다는 관부의 일원으로서 문서를 올렸다고 할 수 있으므로 官府文書라고 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啓辭를 신하 개인이 올린 문서이면서 관부의 문서이기도 한 양면성을 인정하여 신하의 문서와 관부문서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3) 啓辭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최승희, 위의 책, 152쪽 참조.

관하여 國王에게 上奏하는 文書이다.”라고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명칭으로 ‘直啓’, ‘書啓’, ‘臺啓’, ‘合啓’, ‘密啓’, ‘回啓’, ‘抄啓’, ‘傳啓’, ‘啓覆’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啓’가 들어가는 문서 내지는 用語를 통틀어서 설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류의 문서를 서로 다르게 분류한 것이다. 즉 ‘直啓’, ‘回啓’, ‘抄啓’, ‘傳啓’, ‘啓覆’ 등은 문서명이 아닌 일종의 制度와 관련된 用語라고 할 수 있고, 또 弘文館이 포함된 三司의 合啓가 있기는 하지만 ‘合啓’는 ‘臺啓’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書啓’는 일종의 문서명이기는 하나 啓辭와는 무관한 문서이며, ‘密啓’는 문서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임금에게 아뢰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啓辭에 대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古文書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윤병태 등은 □한국고문서정리법□에서 한국 고문서를 대분류[類], 중분류[綱], 소분류[目]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대분류에 疏·劄·啓·狀類 항목을 두고, 啓의 항목 아래에 啓文, 啓本, 啓目, 狀啓, 書啓, 錄啓, 回啓, 啓草 항목을 두었으며, 啓辭는 중분류 중 呈辭와 하나로 분류해 놓았다.⁵⁾ 그러나 이러한 분류도 문제가 있다. 즉 錄啓와 回啓는 문서명이 아닌 일종의 制度와 관련된 用語일 뿐이고, 啓文이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⁶⁾ 그리고 啓草는 啓辭의 草本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啓辭와 하나로 묶여져야 한다. 啓辭를 疏劄類에 가까운 呈辭와 하나로 묶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해준은 기존 고문서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분류를 시도하여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발급자·수령자별 분류체계안이고, 둘째는 문서 형태별 분류체계안이고, 셋째는 문서 내용별 분류체계안이다.⁷⁾ 그중 문서 형태별 분류체계안에서 上疏·請願類 항목 아래에 啓聞을 두었는데, 여기서 ‘啓聞’의 ‘聞’은 ‘文’의 誤字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 논문 안에 있는 <고문서통칭 및 이칭·별칭표(시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해준은 啓文을 통칭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이칭·별칭으로 啓本, 啓目, 狀啓, 書啓, 呈辭, 錄啓, 回啓, 啓草를 열거하였다.⁸⁾ 이와 같은 분류는 대체로 윤병태 등의 분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啓辭는 아예 분류조차 되어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啓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문서에 대한 연구는 주로 私人文書와 地方官府文書を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中央官府文書와 國王文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5) 윤병태·박옥화·장순범, □한국고문서정리법□(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7~38쪽과 57~60쪽 참조.

6) 윤병태 등은 □惠局志□에 啓文式이 나오는 것으로 서술하였으나, 필자가 □惠局志□를 확인한 결과 啓文式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啓本式을 啓文式으로 잘못 본 것으로 보인다. 윤병태 등, 앞의 책, 16쪽 참조; □惠局志□ 該用文狀.

7) 이해준의 「고문서 분류체계 시안」,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22집(2003), 92~101쪽 참조.

8) 이해준, 위의 논문, 102쪽 참조.

외면을 당하였다.)⁹⁾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현재 남아있는 中央官府文書와 國王文書가 양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그마저도 대부분을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어 연구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른바 조선시대 4대 官撰史料라고 불리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備邊司謄錄□ 등에 기록된 문서의 대부분은 中央官府文書와 國王文書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官撰史料를 이해하고 정리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啓辭를 중심으로 啓辭의 유래, 啓辭의 형식, 啓辭의 분류, 啓辭의 처리 절차 순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 啓辭의 유래에서는 實錄을 통해 啓辭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啓辭의 형식에서는 官署志와 元文書 등을 통해 啓辭의 문서 형식을 살펴본 뒤, □승정원일기□를 통해 啓辭라는 문서가 책으로 편찬되고 난 뒤의 기록 형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啓辭의 분류에서는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啓辭를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啓辭의 처리 절차에서는 啓辭의 작성 단계에서 승정원으로의 전달, 승정원에서의 啓辭 처리, 임금의 啓辭 처리, 임금의 裁決을 받은 啓辭의 결과 통보 및 보관에 대해 순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啓辭의 유래

朝鮮時代의 史料에 등장하는 啓辭의 의미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조선 전기의 實

9) 그동안 中央官府文書와 國王文書에 대한 연구는 두 방면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주로 문서 행정과 문서 형식 전반에 관해 연구한 것으로, 전경목, 박준호, 김건우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개별 문서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임민혁, 유지영, 심재권, 명경일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아카넷, 2004), 93~96쪽 참조; 박준호, 「□洪武禮制□와 朝鮮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구□ 22집(2003), 141~163쪽 참조; 박준호, 「□經國大典□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집(2006), 111~128쪽 참조;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1집(2007), 107~129쪽 참조; 김건우, 「갑오개혁기 「公文式」과 公文書의 변화」, □고문서연구□ 29집(2006), 137~162쪽 참조; 김건우, 「韓國 近代 公文書의 形成과 變化에 관한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53~206쪽 참조; 임민혁, 「朝鮮時代 敎書의 作成 및 性格」, □민족문화□ 10집(1999), 107~132쪽 참조;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집(2007), 93~124쪽 참조; 심재권, 「국왕 문서 ‘批答’의 연구」, □고문서연구□ 32집(2008), 67~92쪽 참조;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1~70쪽 참조.

錄에 나타나는 啓辭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때의 啓辭는 구두로 아뢰거나 문서로 아뢰거나 간에 두루 사용되었다.¹⁰⁾ 조선 전기에 啓辭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각 衙門에서 임금에게 아뢰 일이 있으면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가 직접 구두로 아뢰거나 承傳色과 司謁 등을 통해 대신 아뢰도록 했던 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中宗 이후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구두로 아뢰던 방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啓辭의 의미에도 점차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中宗은 신하가 승전색과 사알에게 전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했던 방식을 승전색과 사알 대신 승지가 아뢰도록 하였다.¹²⁾ 仁宗 때에는 신하들이 직접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였던 규정을 폐지하고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 말을 승지에게 전해주면 주서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아뢰도록 하였다.¹³⁾ 그 이후에는 각 衙門에서 직접 草記를 작성하여 承政院에 전달하여 入啓하게 되었는데,¹⁴⁾ 이때를 전후하여 草記와 兒房啓辭의 사용 기준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¹⁵⁾ 즉 都提調가 있는 아문에서는 구

10) “上意初以爲未便，問於啓辭大臣曰。”(□太宗實錄□ 13年(1413) 6月 27日 甲戌); “琛見弼商等書啓之辭，語孝曾等曰：‘初聞之周往語弼商事，未知其詳。今觀弼商等啓辭，昌臣使之周語弼商明矣。’”(□成宗實錄□ 24年(1493) 8月 20日 壬午).

11) “教：‘群臣每於衙日，政事得失、民生利害，皆直啓達。’”(□定宗實錄□ 1年(1469) 閏2月 24日 癸酉); “自今自外啓達事，如肅拜小事外，須面囑承傳色啓達，毋使司謁傳傳啓達。自內傳教事，亦須承傳色親傳，然後聽受施行。”(□世宗實錄□ 6年(1424) 8月 14日 丙辰); “無取旨無言辭公事，令司謁傳啓。”(□世宗實錄□ 25年(1443) 1月 3日 己未).

12) 中宗 이전에 成宗도 승전색과 사알이 신하 대신 아뢰던 것을 승지가 아뢰도록 바꾸었던 기록이 보이지만, 中宗이 다시 이처럼 명한 것으로 보아 중간에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中宗朝，命承旨請對啓事。”(□銀臺條例□ 故事); “寺人傳命，自祖宗朝欲革久矣，至有上疏論之者。在成宗朝，大事則承旨親啓，小事則令宦官傳啓。”(□中宗實錄□ 9年(1514) 1月 27日 辛卯).

13) “仁宗朝，大小公事，凡官必親啓於閣外，此規遂廢，以言傳于承旨，則注書翻以文字啓之。”(□銀臺條例□ 故事).

14) “其後，乃用草記，如今某承旨以某司言啓曰云云，蓋存舊規也。”(□銀臺條例□ 故事); “祖宗朝大小公事，凡官必親啓於榻前。而中歲以來，此規遂廢，凡啓辭以言語傳于承旨，則注書以文字書啓。其後，乃用草記，鋪張文字，略如疏筭之爲。今政院日記書曰：‘某承旨以某司某官言啓曰云云。’蓋存舊規也。”(□芝峰類說□ 卷17 雜事部 故實); “諸曹草記，雖非古制，主上御殿視朝，長官入奏而退，或上不視朝，就政院兒房，令承旨因內侍而口達。內侍恐其難傳，要以文字錄之。後諸曹各疏其事，若短牘之爲，請承旨直奏之，名曰草記。自是兒房啓事雖絕，長陵初，金光煜以草記非古，請革之。退求其所始之世，卒不得也。然草記亦不能罷焉。此進御文書漸繁，而視朝之制廢矣。□恬軒瑣編□”(□燃藜室記述□ 別集 第6卷 官職典故 補諸曹草記). 草記의 사용 시기는 위에 제시한 문헌들의 내용과 □宣祖實錄□에 草記가 처음 등장한다는 점을 종합해볼 때, 빠르면 명종대, 늦어도 선조대에는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草記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34집(2009), 307~353쪽 참조. 심영환은 □經國大典□이 반포된 이후인 宣祖代의 實錄에 草記가 최초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草記의 사용 시기를 선조 연간으로 보았다. 심영환, 「고문서용어 풀이 -草記-」,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20집(2002), 293~300쪽 참조.

15) 兒房啓辭란 都提調가 없는 衙門의 首長이 승정원의 兒房에 직접 나아가서 바치던 啓辭를 말하는

두로 아뢰던 것을 草記로 아뢰도록 하고, 都提調가 없는 아문에서는 구두로 아뢰던 것을 兒房啓辭로 아뢰도록 한 것이다.¹⁶⁾

한편 조선 전기의 啓辭 중에는 후일 口傳啓辭로 불릴 수 있는 啓辭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兩司와 같은 특정한 官司에서 임금에게 올린 啓辭는 단순히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올렸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啓辭는 아직 문서로 정착하기 이전에 구두로 전달한 啓辭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조선 초기부터 나타나는데,¹⁸⁾ 이러한 啓辭도 中宗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 즉 승지가 臺諫을 대신하여 구두로 아뢰던 臺諫의 啓辭를 中宗 때에 臺諫이 직접 아뢰도록 하였다가¹⁹⁾ 다시 臺諫이 직접 문서로 올리도록 명한 것을 보면, 구두로 전달하던 啓辭를 문서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中宗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²⁰⁾ 兩司의 臺諫 이외에 承政院과 藥房 등에서도 啓辭를 올렸는데,²¹⁾ 이들 衙門에서

것이다. 승정원의 兒房은 승정원의 夾廳, 또는 승정원의 下隸房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승정원에 딸린 부속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兒房者。政院下隸房也。”(□宋子大全□ 隨筭 卷6); “乃使光南往兒房<政院夾廳>密啓。”(□素谷先生遺稿□ 卷14 辨誣錄 黃江問答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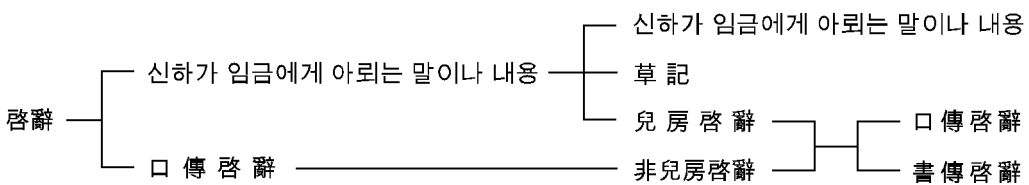
- 16) “傳曰: ‘各該司, 如非都提調衙門, 則曾無草記直啓之規矣。政院察之。’” <校書館, 既非都提調衙門, 而具草記直啓, 殊失事體, 故有是教。>(□光海君日記□ 2年(1610) 11月 20日 辛酉); “又所達: ‘各該司, 若非都提調衙門, 不敢草記, 而或有不得已變通之事, 則提調親詣兒房傳啓, 自是古例。而近來此規漸廢, 該司任自草記, 揆以事體, 殊未妥當。自今以後, 依前定式, 都提調衙門外, 毋得草記事, 更加申飭何如?’”(□承政院日記□ 肅宗 45年(1719) 6月 9日)。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2품 이상의 아문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몇몇 아문만 直啓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3품 이하의 아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都提調나 提調가 首長인 아문은 원칙적으로 直啓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중에서 대체로 大臣이 都提調로 임명되던 都提調衙門은 草記로 直啓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로 判書 등이 提調로 임명되던 提調衙門은 긴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兒房啓辭로 直啓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 17) 여기에서 口傳啓辭는 書傳啓辭와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즉 단순히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문서로 전달하는 書傳啓辭와 내용과 형식은 동일한데 구두로 전달한다는 차이만 있는 것을 가리킨다. 조선 전기의 實錄에는 口傳啓辭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며, □승정원일기□에는 顯宗代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顯宗代 이전에 등장하는 ‘口傳啓曰’에서도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의미와 口傳啓辭라는 의미가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口傳啓辭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口傳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口傳啓辭의 의미를 가지는 啓辭가 조선 전기의 實錄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口傳啓辭는 啓辭가 문서로 정착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口傳啓辭는 啓辭가 문서로 정착하기 이전의 口傳啓辭와 이후의 口傳啓辭로 나눌 수가 있다.
- 18) “憲府啓辭。”(□世宗實錄□ 13年(1431) 11月 10日 辛未)。
- 19) “上曰: ‘言多不能詳聽, 其令臺諫親啓。’”【崔世節新拜承旨, 不慣於啓辭。其於親啓, 言語艱澁難曉, 故上教如此。】”(□中宗實錄□ 15年(1520) 7月 2日 戊子)。
- 20) “今日臺諫所啓, 得聞大綱, 而不能詳知。自今而後, 臺諫之啓辭及辭免等事, 例令書啓。若承旨親啓之日, 則不必爾也。”(□中宗實錄□ 15年(1520) 7月 15日 辛丑) “傳曰: ‘臺諫所啓, 其書城上所之名可也。’

올린 啓辭는 兒房啓辭와 차이가 있었다. 즉 兒房啓辭는 衙門의 首長이 承政院의 兒房으로 직접 나아가서 올리는 啓辭인 반면에 이들 衙門에서 올리는 啓辭는 衙門의 首長이 承政院의 兒房으로 직접 나아가지 않고 本衙門에서 승지와 승전색을 청하여 올리는 啓辭이다.²²⁾ 이를 兒房啓辭와 구별하여 非兒房啓辭라고 부를 수 있다. 문서화의 순서로 이야기하면 兒房啓辭에 비해 非兒房啓辭가 더 일찍 문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도 啓辭의 의미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여전히 사용되었다. 그리고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를 문서로 올리게 된 뒤에도 이러한 啓辭를 구두로 올리는 口傳啓辭는 여전히 존재하였다.²³⁾ 이렇게 보면 조선 초기에 啓辭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口傳啓辭’를 내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다가, 中宗에서 宣祖에 이르는 기간에 다음과 같이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啓辭를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여전히 사용한 것이다. 둘째는 都提調가 있는 衙門에서 구두로 아뢰던 것이 草記로 변화한 것이다. 셋째는 都提調가 없는 衙門에서 구두로 아뢰던 것이 兒房啓辭로 변화한 것이다. 넷째는 都提調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한 아문에서 구두로 아뢰던 啓辭가 非兒房啓辭로 변화한 것이다. 그중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는 다시 구두로 전달하느냐 문서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口傳啓辭와 書傳啓辭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啓辭의 의미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啓辭의 의미 변화



【注書書草, 只書啓辭, 不書臺諫之名, 故有是教。】”(口中宗實錄口 21年(1526) 1月 2日 乙酉).

21) “今者觀政院啓辭。”(口明宗實錄口 14年(1559) 6月 21日 辛酉); “曾因藥房啓辭。”(口光海君日記口 2年(1610) 10月 12日 癸未).

22) “至於處所, 則政院、臺諫、藥房之啓辭, 皆於本所爲之, 則本閣之獨行於他處者, 規例或涉斑駁, 體貌亦似不尊. 處所以本院爲定何如?”(口承政院日記口 正祖 5年(1781) 3月 21日).

23) 口승정원일기口에서 仁祖에서 正祖까지 口傳啓辭를 검색해 보면 총 83건이 출현하는데, 藥房이 69건, 政院이 5건, 大臣이 2건, 賓廳이 2건, 三司가 1건, 2품 이상이 1건, 百官이 1건, 世孫이 1건, 兵曹判書가 1건을 차지한다. 그중 兵曹判書가 올린 口傳啓辭는 兒房啓辭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非兒房啓辭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본고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啓辭는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가 대상이며, 특별히 口傳啓辭까지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書傳啓辭를 위주로 서술하였다. 그중 兒房啓辭는 法典이나 官署志 등에 文書式이 나와 있지 않으며, 현재 남아있는 문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口銀臺條例에 2품 이상의 관원이 兒房啓辭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²⁴⁾ 口은대조례에 규정된 兒房啓辭의 전달 과정을 보면, 兒房啓辭는 조선 전기에 신하가 승정원에 나아가서 임금에게 아뢴 말을 전달했던 관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非兒房啓辭는 口奎章閣志와 口銀臺便攷 등에 文書式이 기록되어 있다.²⁵⁾ 그리고 非兒房啓辭는 임금의 결재를 받고 난 뒤에 승정원에서 문서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이는 현재 문서로 남아있는 非兒房啓辭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으며, 口승정원일기나 口日省錄 등에 실려 있는 非兒房啓辭의 내용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다.

Ⅲ. 啓辭의 형식

啓辭의 형식은 두 방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는 官署志와 元文書 등에 나타난 啓辭의 문서 형식을 살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口승정원일기에 나타난 啓辭의 기록 형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각 官司에서 임금에게 문서를 올릴 때에는 일정한 격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啓辭의 문서 형식이란 이처럼 啓辭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가리킨다. 元文書인 啓辭를 口승정원일기에 옮겨 기록하면서 啓辭의 문서적 특징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啓辭의 기록 형식이란 元文書인 啓辭가 口승정원일기에 옮겨 기록된 형태를 말한 것이다.

24) “二品以上兒房啓辭時，客與主壁及東西壁相拜後，諸承旨出坐，啓辭則客直傳于承傳色。”(口銀臺條例口故事).

25) 口奎章閣志에는 奎章閣에서 올리는 계사의 文書式이 기록되어 있고, 口銀臺便攷에는 王世子나 大臣이 百官을 거느리고서 庭請할 때 올리는 庭請啓辭의 文書式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서의 형식을 살펴볼 때 자세히 고찰하기로 한다. 初草本 口奎章閣志口 卷2 事例 草記<啓辭啓目狀啓>; 口銀臺便攷口 吏房攷 王世子率百官庭請·百官庭請.

26) “大概臺諫啓辭、各曹草記，則留置本院，故本院例爲捧傳旨。”(口承政院日記口 孝宗 3年(1652) 9月 29日); “如各司草記、臺諫啓辭，則文書俱在，雖不能趁即修正，可無遺誤之患。”(口承政院日記口 肅宗 10年(1684) 3月 27日)

1. 官署志와 元文書 등에 나타난 啓辭의 문서 형식

조선 초기의 제도가 집대성된 □經國大典□에는 임금과 신하들이 사용하는 문서 25개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로는 啓本과 啓目 두 가지만 보이고, 啓辭는 보이지 않는다.²⁷⁾ 물론 □經國大典□에 신하나 관부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로 啓本과 啓目 두 가지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외에 사용하는 문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實錄에서는 신하나 관부가 임금에게 올린 문서로 啓本과 啓目 이외에도 上疏, 劄子, 狀啓, 單子 등이 사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다. □經國大典□ 이후에 편찬된 □續大典□과 □大典通編□ 등 국가의 法典은 물론이고, □百憲摠要□나 □典律通補□ 등의 문헌에서도 啓辭式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啓辭式에 대한 규정은 正祖代에 편찬된 □奎章閣志□와 憲宗代에 편찬된 □銀臺便攷□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奎章閣志□ 및 □銀臺便攷□에 규정된 啓辭式과 현재 남아있는 啓辭의 원문서를 중심으로 啓辭의 문서 형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만 兒房啓辭는 啓辭式에 대한 규정은 물론 元文書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非兒房啓辭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奎章閣志□에 기록된 啓辭에 대한 규정을 살펴본다.

啓辭: “閣臣以行草自書閣臣某啓曰云云, 結之曰何如或敢啓或敢稟, 其請承傳色, 讀傳入啓, 如草記之例.”²⁸⁾

위에서는 奎章閣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啓辭의 작성 방식과 전달 방식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奎章閣에서 啓辭를 작성하는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啓辭는 閣臣이 行草로 직접 작성한다. 둘째, 啓辭의 序頭는 閣臣이 아뢰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셋째, 啓辭의 본문 마무리는 요청하는 내용이면 ‘何如’, 보고하는 내용이면 ‘敢啓’, 묻는 내용이면 ‘敢稟’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음으로 □銀臺便攷□에 규정된 啓辭式을 살펴보기로 한다.

書規: “王世子臣諱率百官庭請啓曰, 云云. 末端, 或亟賜允從焉, 或以答羣情焉, 或以光聖德焉, 或以答顯祝之至情焉.”²⁹⁾

書式: “領議政臣某領府事臣某等<只書時原任大臣姓名>率百官庭請啓曰、達曰, 云云<以

27)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28) 初草本 □奎章閣志□ 卷2 事例 草記<啓辭啓目狀啓>.

29) □銀臺便攷□ 王世子率百官庭請

二折次啓紙，注書書之，字樣同院議啓辭。>。末端，或臣民幸甚，或不勝顙祝，或千萬血祝，或勉循學國同情之請焉。”³⁰⁾

위의 啓辭式은 王世子가 庭請할 경우와 大臣이 庭請할 경우에 올리는 庭請啓辭의 書式을 각각 정리해 놓은 것이다. 庭請啓辭의 서두에도 앞에서 살펴본 규장각에서 올리는 계사와 마찬가지로 啓辭를 올리는 사람의 職名과 姓名을 기록하였다. 다만 본문의 마무리는 규장각에서 올리는 啓辭와 달리 청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이는 庭請啓辭를 올리는 목적이 임금이나 王大妃 등에게 명령의 취소나 요청의 수용 등을 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현재 남아 있는 啓辭의 원문서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啓辭를 참고해 보면, 啓辭의 형식은 서두, 본문, 말미 3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서두는 啓辭를 올린 사람의 職名과 姓名이 기록된 부분이고, 본문은 문서를 올린 실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기록된 부분이며, 말미는 啓辭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먼저 啓辭의 원문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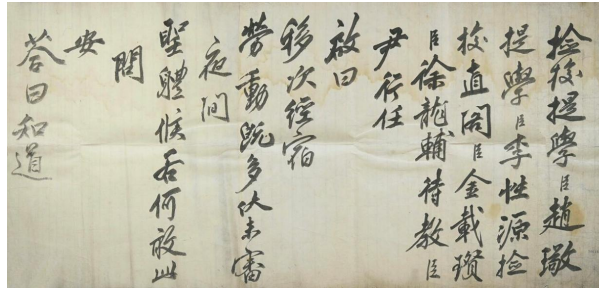


(行都)
 卽者吏曹郎
 廳來言平康
 縣監金永受
 憲府則旣已
 署經而諫院
 則大司諫獻
 納正言一員未
 差司諫權賤
 在外正言李
 堉未署經無
 以備員署經
 云未差之代
 政官牌招開
 政差出待
 下批牌招以
 爲署經之地
 何如
 一司除署經
 下司諫院
 下吏曹

30) □銀臺便放□ 百官庭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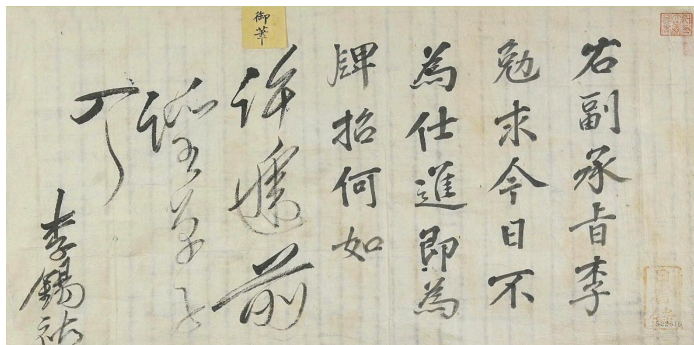
3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검색일 : 2009년 10월 23일).

<그림 2>32)



檢校提學臣趙璪
 提學臣李性源檢
 校直閣臣金載瓚
 臣徐龍輔待教臣
 尹行任
 啓曰
 移次經宿
 勞動既多伏未審
 夜間
 聖體候若何敢此
 問
 安
 答曰知道

<그림 3>33)



(日省錄)
 右副承旨李
 勉求今日不
 爲仕進即爲
 牌招何如
 (御筆)許遞前
 望單子
 入之
 李錫祐

32) 위와 같음.

33) 위와 같음.



<그림 4> (▲전면 ▼후면)34)



(전면)
 噫嘻痛矣亂臣賊子何
 代無之而豈有如今日弼
 濟岐鉉玉鉉諸賊之窮
 凶極惡者乎俱是覆
 載之所不容神人之所
 共憤宜其殄殄滅之
 無有育易種者審矣
 …
 其非失刑之大者乎請
 謀反大逆罪人岐鉉
 知情不告罪人玉鉉
 一以弼濟所施適雲
 之例施之焉

(후면)
 兩司合啓十二
 尹錫圭
 正言閔載吾
 獻納魚允中
 趙秉弼
 持平奇觀鉉
 掌令尹時榮
 司諫金裕行
 執義宋奎灝
 行大司諫朴孝正
 大司憲姜蘭馨
 辛未十二月二十五日
 兩司合啓座目

<그림 1>에서는 ‘卽者~何如’까지가 원래 승정원의 啓辭이고, 오른쪽 위의 ‘行都’는 啓辭를 入啓한 담당 승지가 行都承旨임을 나타낸 것이며, 왼쪽의 ‘一司除署經’은 啓辭에 대한 임금의 批答을 나타내고, 왼쪽 끝 부분의 ‘下司諫院’과 ‘下吏曹’는 임금의 裁決을 받은 啓辭의 내용을 ‘司諫院’과 ‘吏曹’에 각각 통보하라는 뜻이다. <그림 2>에서는 ‘檢校~問安’까지가 원래 규장각의 啓辭이고, 왼쪽의 ‘答曰知道’는 啓辭에 대한 임금의 批答이다. <그림 3>에서는 ‘右副承旨~何如’까지가 원래 승정원의 啓辭이고, 왼쪽의 ‘許遞前望單子入之’는 啓辭에 대한 임금의 비답인데 이를 임금이 직접 쓴 批答이라는 뜻에서 그 위에 ‘御筆’이라고 표시해 놓았다. 그리고 왼쪽 끝 부분의 ‘李錫祐’는 임금의 批答에 따라 前望單子를 들여 李勉求의 후임 승지로 李錫祐를 落點하였다는 표시이며,³⁵⁾ 오른쪽 아래 부분에 ‘日省錄’이라고 새긴 인장을 찍은 것은 이 啓辭 내용을 □日省錄□에 기록하라는 표시이다.³⁶⁾ <그림 4>

34) 위와 같음.

35) 승정원일기口 純祖 18년(1818) 8월 16일 기사를 보면, 都承旨 李憲琦의 啓辭와 그에 대한 純祖의 답변이 위에 인용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승지의 前望單子 중에서 李錫祐를 落點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36) □日省錄□ 純祖 18년(1818) 8월 16일 기사를 보면, “遞承旨李勉求, 以李錫祐代之<前望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는 兩司의 습啓로, 전면에 啓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후면에 함께에 동참한 兩司 臺諫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임금의 비답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啓辭의 草本이나 寫本일 가능성이 높다.

위의 元文書를 참고하여 職名과 姓名의 표기 방식에 따라 啓辭의 형식을 분류하면 4가지가 된다. 첫째 형식은 啓辭를 올린 사람의 職名이 啓辭의 내용과는 별도로 앞부분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형식으로, <그림 1>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형식은 啓辭를 올린 사람의 職名과 姓名이 문서의 서두 부분에 큰 글씨로 표기되고 ‘曰’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그림 2>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형식은 啓辭를 올린 사람의 職名과 姓名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형식으로, <그림 3>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형식은 啓辭를 올린 사람의 職名과 姓名이 문서의 뒷면에 별도의 座目으로 표기되어 있는 형식으로, <그림 4>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원문서의 말미에는 모두 인장이 찍혀 있지 않고, 官銜과 연월일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³⁷⁾ 이는 草記와도 유사한 부분으로,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啓本이나 啓目に 비해 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고 하겠다.³⁸⁾ 啓辭에 대한 批答은 모두 啓辭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임금이 직접 批答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에 ‘御筆’이라고 기록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御筆’이라는 기록이 없다. 그리고 <그림 2>처럼 批答임을 나타내주는 ‘答曰’이 기록된 경우와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처럼 ‘答曰’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2.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啓辭의 기록 형식

앞에서는 □奎章閣志□와 □銀臺便攷□, 元文書를 중심으로 啓辭의 문서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啓辭의 기록 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啓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⁹⁾

1. “政院啓曰: ‘戶曹判書趙時俊, 特教申飭之下, 謂有情勢, 懸牌闕外, 已至經宿. 屢度催促, 無意膺命, 事體所在, 誠極未安. 推考警責何如?’ 傳曰: ‘…… 此啓辭勿施. 卽爲仕進,

37) 그림 4의 경우에는 座目に 직명과 연월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서의 말미에 기록되는 官銜이나 연월일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啓辭의 서두에는 문서를 올리는 사람의 職名과 姓名이 기록되는 점으로 볼 때 座目的 기록은 啓辭의 서두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8)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39) 啓辭의 사례는 □승정원일기□에 자주 출현하는 政院, 藥房, 兩司, 吏批 등의 啓辭를 뽑되, 그에 대한 임금의 답변 중에 해당 문서가 啓辭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此啓辭’라는 말이 나오는 사례 중에서 선택하였다.

更勿以去就啓稟。”⁴⁰⁾

2. “藥房口傳啓曰: ‘卽伏聞醫官所傳之言, 則翁主有所患, 至於發斑, 而雖非痘症, 蓋是瘡類云。卽今閭巷, 或有此症, 而亦多傳痛。其在慎重之道, 不可密邇於東宮, 自內從便善處, 使相隔遠, 毋得往來相通, 不勝幸甚, 敢啓。’ 傳曰: ‘已依此爲之矣。此啓辭, 勿出於東宮朝報宜矣。’⁴¹⁾

3. “大司諫李命植啓曰: ‘臣於此職, 萬萬不稱, 前後屢叨, 貽羞臺閣, 何敢爲唐突承膺之計? …… 請命遞斥臣職。’ 以承傳色口傳下教曰: ‘一日之內, 先武後文, 近八其君, 若是其困乎? 嶺南道臣時事, 今於薇垣長, 若是撕捱乎? 極爲駭然。捧納承旨爲先遞差。此啓辭給之。李命植侍從案永付。’⁴²⁾

4. “吏批啓曰: ‘判書呈辭受由, 參判未差, 小臣獨政未安。何以爲之? 敢稟。’ 傳曰: ‘判書旣已遞差, 此啓辭, 還爲出給。’⁴³⁾

위에서 1, 2, 4의 啓辭는 각각 政院, 藥房, 吏批에서 官司名으로 아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3의 啓辭는 大司諫李命植이 官員 이름으로 아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중 2는 口傳啓辭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서 형식을 갖춘 書傳啓辭이다. 그리고 2는 보고하는 형식인 ‘敢啓’로, 1과 3은 요청하는 형식인 ‘何如’와 ‘請’으로, 4는 문의하는 형식인 ‘何以爲之敢稟’으로 본문을 마무리하였다. 啓辭에 대한 임금의 처분은 전교와 하교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⁴⁾ 그리고 元文書에는 啓辭를 올린 주체가 관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口승정원일기口에는 啓辭를 올린 관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官司名으로도 기록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실제 元文書에는 관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을 口승정원일기口에 옮겨 기록하면서 官司名으로 바꾸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40) 口承政院日記口 正祖 10年(1786) 6月 17日.

41) 口承政院日記口 英祖 14年(1738) 11月 22日.

42) 口承政院日記口 英祖 47年(1771) 12月 18日.

43) 口承政院日記口 肅宗 37年(1711) 12月 30日.

44) 여기에서는 ‘此啓辭’가 나오는 사례를 골라 제시하다 보니 임금의 처분이 전교와 하교로 되어 있는 사례만 인용하였으나, 실제 啓辭에 대한 임금의 裁決은 비답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45) 口승정원일기口에는 藥房의 계사를 기록할 때 藥房都提調 이하의 職名과 姓名을 기록한 경우와 藥房啓曰로 기록한 경우가 뒤섞여 있고, 양사의 계사도 대간의 직명과 성명을 기록한 경우와 府啓, 院啓 등으로 기록한 경우가 뒤섞여 있는데, 이는 元文書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통일된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啓辭의 기록 형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관부에서 올린 啓辭 앞에는 草記와 달리 入啓한 승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⁴⁶⁾ 둘째, 啓辭를 올린 주체가 관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관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다. 셋째, 啓辭를 올린 주체의 말[言]이나 뜻[意]을 승지가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草記와 달리 啓辭를 올리는 주체가 직접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⁷⁾ 넷째, 啓辭의 본문 말미는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면 ‘之意敢啓’, 청하는 내용이면 ‘請’이나 ‘何如’, 묻는 내용이면 ‘何以爲之(敢稟)’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섯째, 啓辭에 대한 임금의 처분은 전교, 하교, 비답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IV. 啓辭의 분류

啓辭의 유래에서 啓辭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즉 하나는 조선 초기에 구두로 올리던 啓辭가 中宗 이후에 문서로 변화된 것이고, 또 하나는 明宗이나 宣祖 연간에 都提調가 있는 衙門에서 구두로 아뢰던 것을 草記로 올리게 되자 都提調가 없는 衙門에서 구두로 아뢰던 것을 啓辭로 올리도록 한 것이다. 후자는 衙門의 首長이 承政院의 兒房에 직접 나아가서 啓辭를 올리는 兒房啓辭이고, 전자는 本衙門에서 승지와 승전색을 청하여 곧바로 啓辭를 전달하는 非兒房啓辭이다.

이처럼 啓辭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우선 啓辭를 구두로 올리는 啓辭와 문서로 올리는 啓辭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외에도 啓辭를 형식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啓辭는 문서로써의 성격을 상실하여 형식에 따른 분류가 어렵고,⁴⁸⁾ 또 해당 아문의 성격에 따라 啓辭의 내용도 달라지므로 내용에 따라 분류하기도 어렵다.

啓辭는 啓辭를 올리는 주체인 衙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조선시대의 衙門은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常設衙門과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權設衙門이 있는데, 常設衙門은 □經

46) □승정원일기□에 草記를 기록할 때에는 入啓한 승지의 이름을 앞에 기록하였다.

47) □승정원일기□에 草記를 기록할 때에는 草記를 올린 주체의 말[言]이나 뜻[意]을 승지가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48) 최승희는 주체와 대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고받는 글을 문서라 정의하고, 편찬·편집된 書籍類, 日記나 備忘錄과 같은 記錄類, 著述類, 謄錄類, 帳籍類 등을 문서와 구별하였다. 최승희, 앞의 책, 17~23쪽 참조.

國大典□에 東班과 西班으로 나누고 다시 품계에 따라 분류해 놓았다.⁴⁹⁾ 常設衙門 중 京官職은 다시 都提調나 提調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都提調衙門, 提調衙門, 非提調衙門으로 분류할 수 있다.⁵⁰⁾ 그중 都提調衙門은 원칙적으로 草記를 사용하는 아문이고, 提調衙門은 원칙적으로 兒房啓辭를 사용하는 아문이다.⁵¹⁾ 非提調衙門의 경우에는 草記를 사용하는지 啓辭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非提調衙門의 경우에는 仁祖代부터 대부분 草記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非提調衙門이라고 할 수 있는 六曹의 경우에도 兒房啓辭를 올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⁵²⁾ 한편 非提調衙門 중 承政院, 藥房, 兩司, 吏批와 兵批 등 특정 아문이나 기구의 경우에는 草記보다 대부분 啓辭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아문의 啓辭는 衙門의 首長이 직접 승정원의 兒房에 나아가서 바치는 이른바 兒房啓辭가 아니라 本衙門에서 승지와 승전석을 청하여 곧바로 전해주는 非兒房啓辭이다. 따라서 非提調衙門의 경우에는 草記를 사용하는 아문, 兒房啓辭를 사용하는 아문, 非兒房啓辭를 사용하는 아문이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는 啓辭는 非提調衙門의 非兒房啓辭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啓辭를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兒房啓辭

兒房啓辭는 都提調가 없는 중앙의 衙門에서 首長이 직접 승정원의 兒房에 나아가서 임금에게 올리는 啓辭를 말한다.⁵³⁾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兒房啓辭가 별로 기록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승정원일기□에서 兒房啓辭를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兒房+啓曰’로 기록된 문서를 찾아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提調가 衙門의 首長이어서 원래 兒房啓辭를 올리는 衙門의 官司名으로 찾아보는 방법이다.

49)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外官職 / 兵典 京官職·外官職.

50) □經國大典□의 京官職에 나오는 常設衙門을 都提調衙門, 提調衙門, 非提調衙門으로 분류한 표는 필자의 앞의 논문 324~325쪽 참조. □승정원일기□에는 迎接都監과 같은 權設衙門의 啓辭도 기록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별도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51) 실제로는 都提調衙門 중에서도 藥房처럼 草記와 啓辭를 모두 사용하는 아문이 있고, 提調衙門에서도 草記를 올린 사례가 발견되지만, 여기에서는 都提調가 있는 아문에서만 草記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52) “兵曹判書閔維重兒房啓曰。”(□承政院日記□ 肅宗 6年(1680) 12月 19日); “禮曹判書臣申琬、參議臣趙相愚, 俱詣政院兒房啓曰。”(□承政院日記□ 肅宗 22年(1696) 12月 17日).

53) 주) 16 참조.

<표-2>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兒房啓辭의 분류

分類	兵曹	禮曹	司圃署	司宰監	繕工監	氷庫	宗親	獻官	使臣	合計
肅宗	4	1	2				1	2		10
景宗									1	1
英祖				1		1				2
正祖					1	1				2
合計	4	1	2	1	1	2	1	2	1	15

*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중 仁祖에서 正祖까지 兒房啓辭로 기록된 사례만을 검색하여 분류한 것이다.

전자의 방법으로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본 결과 ‘兒房啓辭’로 기록되어 있어 兒房啓辭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記事는 <표-2>에 나타나듯이 15건에 불과하였다. 15건을 文書를 올린 주체에 따라 분류해 보면, 提調가 首長인 衙門에서 올린 것이 繕工監 1건, 司宰監 1건, 氷庫 2건, 司圃署 2건 등 총 6건이고, 提調가 없는 衙門에서 올린 것이 兵曹 4건, 禮曹 1건, 등 총 5건이며, 기타 權設官職이나 개인의 자격으로 올린 것이 宗親 1건, 獻官 2건, 使臣 1건 등 총 4건이다. 이를 통해서 提調가 首長인 아문 이외에 六曹에서도 兒房啓辭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官司에서 뿐만 아니라 權設官職인 獻官이나 使臣과 宗親 등 개인의 이름으로도 兒房啓辭를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六曹에서 啓辭를 올린 사례는 이외에도 몇 차례 더 확인된다.⁵⁴⁾ 그러나 늦어도 正祖 때가 되면 草記를 올리는 아문에서는 兒房啓辭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六曹에서도 兒房啓辭를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英祖나 正祖 때에도 ‘○曹啓辭’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啓辭의 의미를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 등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후자의 방법 즉 提調가 首長인 衙門에서 올린 문서를 찾아 兒房啓辭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提調가 首長인 衙門도 都提調가 首長인 衙門처럼 提調의 品階와 상관없이 衙門의 품계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 즉 정3품부터 종6품까지 종3품을 제외하고 7단계로 나뉘어져 있다.⁵⁶⁾ □승정원일기□에서 提調가 首長인 衙門의 문서를 찾아보면 兒房啓辭 뿐만 아니라 草記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提調衙門에서 올린 草記와 啓辭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그중 司僕寺는 提調가 首長인 衙門이지만 으레 大臣을 提調로 차출

54) “答兵曹啓辭曰”(□承政院日記□ 仁祖 7年(1629) 2月 3日); “答禮曹啓辭曰”(□承政院日記□ 肅宗 元年(1675) 6月 11日).

55) “俄者兵判請對, 有兒房啓辭之命, 而直草記衙門, 則本無兒房啓辭之例云矣。”(□承政院日記□ 正祖 元年(1777) 8月 4日).

56)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外官職.

하여 都提調衙門이나 마찬가지로였으므로, □승정원일기□에는 司僕寺에서 올린 草記가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⁵⁷⁾ 司僕寺 이외의 提調衙門에서도 草記를 사용한 것은 □승정원일기□의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兒房啓辭를 올리는 衙門에서도 마음대로 草記를 사용하는 추세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⁵⁸⁾ 그리고 提調衙門에서 것처럼 兒房啓辭 대신 草記를 사용했던 이유는 草記가 간편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실제로 草記는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啓本이나 啓目에 비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⁵⁹⁾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正祖가 掌苑署와 濟用監처럼 兒房啓辭를 올리는 衙門에게 兒房에 나와 草記하라고 명하여 다음날 이들 아문에서 草記를 올린 사례도 보인다.⁶⁰⁾ 이렇게 보면 兒房啓辭를 올린 衙門에서는 草記를 올리더라도 衙門의 首長인 提調가 직접 承政院의 兒房에 나아가서 草記를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六曹가 兒房啓辭를 올리다가 草記를 올리는 衙門으로 바뀐 것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시기가 뒤로 갈수록 兒房啓辭의 사용은 점차 줄고 草記의 사용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표-3>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을 듯하다. 즉 재위 기간이 서로 비슷했던 仁祖와 正祖, 肅宗과 英祖를 각각 비교해 보면, 草記는 仁祖代에 289건이던 것이 正祖代에는 497건으로, 肅宗代에 240건이던 것이 英祖代에는 791건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이에 반해 啓辭는 仁祖代에 29건이던 것이 正祖代에는 7건으로, 肅宗代에 122건이던 것이 英祖代에는 8건으로 감소하였다.⁶¹⁾ 이처럼 점차 草記를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시기가 뒤로 갈수록 원래 兒房啓辭를 올려야 하는 提調衙門에서도 草記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7) “提調二員，一員議政兼。”(□續大典□ 史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司僕寺); “司僕寺，雖非都提調衙門，近來提調一員，連以大臣差出矣。今亦依前例以大臣擬望之意敢啓。”(□承政院日記□ 英祖 元年(1725) 5月 17日).

58) 주) 16 참조. 肅宗 때에 처음 편찬되어 英祖와 正祖 때에 두 차례 보완된 □惠局志□에는 惠民署의 沿革, 考課 등과 함께 惠民署에서 사용하는 文書式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草記式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提調衙門인 惠民署에서도 공식적으로 草記를 사용하였다고 본다면, 草記를 사용할 수 있는 아문에 대한 원칙과 실제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惠局志□ 該用文狀 草記式.

59)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典律通補□ 別編 本朝文字式.

60) “令各該司提調各別查實，明日使之來詣兒房草記。”(□承政院日記□ 正祖 8年(1784) 閏3月 1日); □承政院日記□ 正祖 8年(1784) 閏3月 2日. 이러한 草記는 임금의 명에 따라 올린 것이므로 정당한 규례를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고,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올린 草記라고 할 수 있겠다.

61) 재위 기간이 서로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提調衙門은 원칙적으로 草記를 올릴 수 있는 아문이 아니라 兒房啓辭를 올릴 수 있는 아문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草記와 啓辭의 사용 횟수를 비교해본 것이다.

<표-3>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提調衙門의 草記와 啓辭

分類		草記							啓辭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合啓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合計
정3품	尙衣院	63	8	19	20	1	19	2	132		2	2	6		5	1	16
	司僕寺	120	69	78	212	45	766	477	1767	2	61	10	111				184
	內資寺	1				2			3	2				1			3
	內膳寺			1					1	2							2
	司禦寺							1	1	1	1						2
	禮賓寺	98							98								0
	濟用監							1	1								0
	繕工監	1	1	1			1		4	2			1			1	4
	司宰監	1				1			2	4	1	1			1	1	8
	掌樂院	3			3	2	1	7	16	1						1	2
典醫監						1		1	1					1		2	
정4품	典設司	1			3		1		5								0
중5품	平市署	1			1	1	2	4	9								0
	長興庫								0								0
정6품	氷庫								0		1		1		1	1	4
	掌苑署				1	1		1	3							1	1
	司圃署					3		1	4			1	2			1	4
중6품	典牲署								0	2							2
	造紙署								0	1			1				2
	惠民署							3	3	1							1
	圖書署								0								0
	活人署								0								0
	瓦署								0			1					1
	典獄署								0								0
合計		289	78	99	240	56	791	497	2050	19	66	15	122	1	8	7	238

* 이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중 仁祖에서 正祖까지를 검색하여 얻은 결과로, 검색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草記와 啓辭의 구분은 □승정원일기□의 일반적인 기록 형식에 따랐다. 즉 草記는 ‘承旨名+官司名(官職名) +言(意)啓曰’로, 啓辭는 承旨名 없이 ‘官司名+啓曰’로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兒房啓辭는 都提調가 없는 衙門에서 올리던 문서로, 肅宗代에는 六曹처럼 都提調나 提調를 두지 않은 衙門에서도 兒房啓辭를 올렸다. 그러나 시기가 뒤로 갈수록 문서 작성의 간편성과 처리의 신속성 때문에 草記를 사용하는 아문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늦어도 正祖代에 와서는 草記를 올리는 아문에서는 兒房啓辭를 올리지 않았다. 따라서 兒房啓辭는 원래 草記를 올릴 수 없는 아문에서 올리던 문서로 提調衙門과 非提調衙

門에서 올리던 문서였으나, 뒤에 와서는 사실상 提調衙門만이 올리는 문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提調衙門에서도 草記를 사용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非兒房啓辭

非兒房啓辭는 衙門의 首長이 承政院의 兒房에 직접 나아가지 않고 승지와 승전색을 청하여 本衙門에서 직접 올리는 啓辭를 말한다. 非兒房啓辭를 올리는 아문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한정할 수는 없으나, □승정원일기□를 보면 특정 官司의 경우에는 草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啓辭를 사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衙門이 承政院, 藥房, 兩司이다. 그 외에 東班의 人事를 담당했던 機構인 吏批와 西班의 人事를 담당했던 機構인 兵批에서도 주로 啓辭를 사용하였다.⁶²⁾ 이러한 사실은 英祖代와 正祖代 □승정원일기□ 중 무작위로 각각 1개월의 記事를 추출하여 관부문서를 분류한 <표-4>와 <표-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상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관부문서 중 啓辭는 草記와 함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며,⁶³⁾ 都提調衙門인 藥房을 제외하면 啓辭의 대부분은 非提調衙門의 非兒房啓辭가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아문에서 올리는 啓辭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올리는 特定啓辭를 중심으로 非兒房啓辭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4>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관부문서의 분류

分類	草記	啓辭	啓本	啓目	狀啓	書啓	上疏	劄子	單子	總計
영조 11년 3월	131	253	0	0	8	18	64	3	1	478
정조 9년 10월	239	158	7	22	11	0	17	16	14	484
總計	370	411	7	22	19	18	81	19	15	962

62) □승정원일기□에는 吏批와 兵批에서 올린 문서로 啓辭 이외에도 草記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 吏批·兵批의 草記와 啓辭는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63) 연갑수는 “⑧ 草記·書啓·別單類, ⑨ 狀啓類, ⑩ 刑獄類 등은 대부분 《승정원일기》에는 기재하지 않던 것을 《일성록》에서 기재하기 시작한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別單과 狀啓는 □日省錄□과 달리 □승정원일기□에는 요점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렇다 하더라도, 書啓와 刑獄類는 □승정원일기□에 다수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에 실린 관부문서 중 草記는 啓辭와 함께 가장 많이 실린 문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연갑수, 「《日省錄》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2004년도 민족문화추진회 정기학술회의 “朝鮮後期史의 寶庫 □日省錄□의 새로운 照明”, 서울, 세종문화회관, 37쪽 참조.

<표-5>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啓辭를 올린 衙門의 분류

分類	承政院	藥房	兩司	吏批·兵批	其他	總計
영조 11년 3월	227	3	7	15	議政府 1	253
정조 9년 10월	129	0	28	1	0	158
總計	356	3	35	16	1	411

1) 政院 啓辭

承政院은 원래 都提調가 없는 衙門이므로 草記를 올리는 吏문이 아니다.⁶⁴⁾ □승정원일기□에 승정원의 草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으며, 거의 대부분은 啓辭이다. 이러한 사실은 □六典條例□와 □銀臺條例□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六典條例□와 □銀臺條例□에는 승정원에서 임금에게 문서를 올려야 할 경우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서의 대부분이 啓辭이고 草記를 올린다는 규정은 없다. 承政院의 啓辭는 <표-4>와 <표-5>에 나타나듯이 단일 官司에서 올린 문서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는 □승정원일기□가 승정원의 일기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승정원에서 올리는 啓辭는 승정원에서 거행하는 업무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내용에 따라 啓辭를 나누어 보면, 관원의 牌招와 관련하여 올리는 牌招啓辭, 관원의 推考와 관련하여 올리는 推考啓辭, 정기적인 행사를 실행할지의 여부 등을 묻는 取稟啓辭, 정기적인 행사를 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는 頌稟啓辭, 관원의 교체나 차출, 업무 조정 등과 관련하여 올리는 變通啓辭, 大臣이 臺諫의 탄핵 등으로 義禁府에 待命하였을 때 이를 보고하는 待命啓辭, 사헌부의 臺臣이 모두 사정이 생겨 자리가 비었을 때 監察이 대신 茶時를 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茶時啓辭, 傳旨를 비롯한 각종 문서의 捧入과 관련하여 올리는 捧入啓辭, 승정원에서 임금의 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王명을 거두어주기를 청할 때 올리는 繳還啓辭, 임금이 問議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問議啓辭, 승지가 王命 등을 봉행하기 위해 꺾 밖을 나갈 때 下直하면서 올리는 下直啓辭, 승지가 王명을 받들어 특정 장소를 奉審하거나 관원 등을 摘奸하고 나서 올리는 奉審摘奸啓辭, 祭享에 쓸 香祝을 전하거나 받는 일과 관련하여 올리는 傳香受香啓辭, 승지가 임금의 명을 받아 典獄署 등에 수감되어 있는 輕罪囚를 석방하고 올리는 輕囚釋放啓辭 등

64) 正祖는 承政院은 草記를 올리는 衙門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승정원일기□에는 정원에서 草記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다만 그 숫자가 극히 적을 뿐이다. “依前定式施行之意嚴飭, 但政院無草記之規。”(□承政院日記□ 正祖 5年(1781) 7月 3日); “李植, 以政院言啓曰。”(□承政院日記□ 仁祖 7年(1629) 2月 22日); “因政院草記。”(□承政院日記□ 正祖 11年(1787) 5月 6日).

이 있다.⁶⁵⁾

2) 藥房 啓辭

藥房에서 올리는 啓辭는 대부분 問安啓辭이다. 藥房에서는 한 달에 6차례 정기적으로 임금에게 問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에도 문안을 하였다.⁶⁶⁾ 問安은 口頭로 하는 경우와 文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두로 하는 問安에는 藥房의 관원이 입시하지 않고 口頭로 문안하는 口傳問安⁶⁷⁾과 藥房의 관원이 입시하여 임금 앞에서 구두로 문안하는 入侍問安⁶⁸⁾이 있다. 文書로 하는 問安에는 藥房에서 문안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어 올리는 單子問安⁶⁹⁾과 임금의 건강이나 안부 등을 묻는 내용으로 문장을 지어서 올리는 啓辭問安⁷⁰⁾이 있다. 藥房에서 啓辭를 올려 問安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6차례 問安하는 경우 이외에도 國恤 때와 遷陵 때에도 행하였다.⁷¹⁾ 藥房에서 啓辭를 올려 問安할 때에는 약방의 세 提調가 갖추어져야 행하였다.⁷²⁾

藥房의 問安啓辭 내용은 임금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부 등을 묻는 내용이지만, 임금의 병 등이 심각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세와 처방을 거론하였다. 이처럼 임금의 병이 심각할 때에는 藥房에서 하루에 여러 차례 啓辭를 올리기도 하였다. 임금이 거동한 뒤에 궁으로 돌아오면 약방에서는 閤門 밖에서 문안하고, 그 이외에는 반드시 啓辭를 올려 문안하였다.⁷³⁾

3) 兩司 啓辭

65)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였다.

66) 정기적인 문안은 매일 5日, 10日, 15日, 20日, 25日, 30日에 있었고, 비정기적인 문안은 임금이 거동한 날이나 儀式을 진행한 날 등이다. □銀臺條例□ 禮攷 藥房.

67) □六典條例□ 禮典 內醫院 問安; “政院、玉堂、藥房, 口傳問安, 答曰: ‘知道.’”(□承政院日記□ 英祖 6年(1730) 1月 19日).

68) □六典條例□ 禮典 內醫院 入診; “甲辰正月二十八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三提調入侍時, …… 命善等進前曰: ‘夜間滯候若何?’ 上曰: ‘差勝於昨日矣. …….’”(□承政院日記□ 正祖 8年(1784) 1月 28日).

69) □六典條例□ 禮典 內醫院 問安; “大殿, 朝廷二品以上、六曹, 單子問安, 答曰: ‘知道.’”(□承政院日記□ 英祖 14年(1738) 9月 13日).

70) □六典條例□ 「禮典 內醫院 問安」; “藥房都提調蔡濟恭、提調鄭昌順、副提調洪明浩啓曰.”(□承政院日記□ 正祖 14年(1790) 1月 11日).

71) □六典條例□ 禮典 內醫院 問安.

72) □六典條例□ 禮典 內醫院 問安.

73) “此是經宿問安, 則豈可於閤外爲藥房問安乎? 還宮後問安, 則例爲閤門問安. 而外此則藥房問安, 必有啓辭, 雖無啓辭, 亦必有口傳啓辭, 皆於本院爲之矣. 今日則令副提調書出藥房啓辭, 仍以例批頒布, 自明日勿爲詣閤問安.”(□承政院日記□ 正祖 23年(1799) 3月 4日).

兩司의 臺諫은 매일 임금에게 올릴 啓辭를 작성하여 승지와 주서에게 전달하여 入啓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傳啓라고 하였다.⁷⁴⁾ 傳啓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臺廳 傳啓이고 또 하나는 榻前 傳啓이다. 臺廳 傳啓는 詣臺 傳啓라고도 하는데 兩司의 臺諫이 각각 謁 안의 臺廳에 나아가서 啓辭를 전달하는 것이다.⁷⁵⁾ 臺廳에서 傳啓할 때에는 승지와 주서가 臺廳에 나와서 啓辭를 받아갔다. 榻前 傳啓는 入侍 傳啓라고도 하는데 兩司의 대간이 입시하여 御前에서 啓辭의 내용을 임금에게 아뢰는 것이다.⁷⁶⁾ 兩司의 傳啓는 司憲府와 司諫院이 각각 독자적으로 행하였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양사가 합동으로 啓辭를 올리거나 三司가 합동으로 啓辭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를 合啓라고 하였다.

兩司의 啓辭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임금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논열하거나 신하의 언행 등에 대해 탄핵하는 내용의 論劾啓辭, 다른 신하의 탄핵이나 비난 등을 받아 臺諫의 직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臺諫이 자신의 직임을 체차하거나 과직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의 避嫌啓辭, 避嫌啓辭를 올린 臺諫의 조치나 행적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평가한 뒤에 그를 遞差하도록 할 것인지 出仕하도록 할 것인지를 판정해 주는 내용의 處置啓辭, 새로 임명된 臺諫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 빨리 올라오도록 下諭할 것을 청하는 내용의 下諭啓辭 등이 있다.

4) 吏批와 兵批 啓辭

吏批는 吏曹의 堂上官과 承政院의 승지 등으로 구성되어 東班의 人事를 담당했던 機構의 명칭이며, 兵批는 兵曹의 堂上官과 承政院의 승지 등으로 구성되어 西班의 人事를 담당했던 機構의 명칭이다. 吏批 政事와 兵批 政事は 각각 謁내에 있던 吏批 政廳과 兵批 政廳에서 행해졌다. 政事が 열리면 吏房 承旨와 兵房 承旨가 각각 吏批 政事와 兵批 政事に 참석하였는데, 승지가 부족하면 한 명의 승지가 두 곳의 政事に 모두 참석하기도 하였다.⁷⁷⁾

吏批와 兵批에서 올리는 啓辭는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다.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정사를 거행할 때에 세 당상 중에서 두 당상이 참여하지 못하고 한 명의 당상만이 정사를 거행하게 되었을 때 올리는 獨政啓辭, 정사를 열 시기에 대해 묻거나 정사에 참석할 사람

74) □銀臺條例□ 刑攷 臺諫. 臺諫의 傳啓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발표할 생각이다.

75) “臺臣既已肅命, 則詣臺傳啓, 自是三百年舊例。”(□承政院日記□ 英祖 11年(1735) 2月 28日); “臺廳傳啓, 自是下僚之責, 至於長官, 則入侍之外, 元無詣臺傳啓之規。”(□承政院日記□ 英祖 45年(1769) 11月 19日).

76) “今後臺諫, 榻前傳啓時, 勿以笏記展讀, 以言語取達事, 下教。”(□承政院日記□ 肅宗 12年(1686) 閏4月 13日); “殿座之時, 雖長官, 既已詣臺, 則例當入侍傳啓。”(□承政院日記□ 正祖 元年(1777) 7月 5日).

77) “臣吏批政廳進參, 而右承旨鄭民始, 今方入侍, 臣兵批政廳兼進之意敢啓。”(□承政院日記□ 正祖 元年(1777) 12月 28日).

의 牌招를 청하는 내용의 開政啓辭, 관원을 차출해야 하나 擬望할 사람이 부족할 때, 또는 관원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들을 變通하는 일과 관련하여 올리는 變通啓辭, 관원에게 加資하는 일과 관련하여 올리는 加資啓辭, 吏批나 兵批에서 문서를 올려 啓下 받고 난 뒤에 문서의 오류를 발견하고서 수정할 때 올리는 付標啓辭, 大臣 등이 議政에서 물러나면 敦寧府나 中樞府의 관직에 제수하기 위하여 置處政事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올리는 置處啓辭 등이 있다. 임금이 殿坐할 때와 獨政이 겹치면 이조 참판이나 이조 참의가 입시하여 啓辭를 직접 아뢰었다.⁷⁸⁾

5) 特定啓辭

特定啓辭는 평상시에 올리는 啓辭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특별히 올리는 啓辭를 말한다. 대표적인 特定啓辭로는 庭請啓辭, 賓廳啓辭, 院議啓辭 등이 있는데, 이들도 모두 非兒房啓辭의 일종이다.

(1) 庭請啓辭

世子나 世孫 또는 大臣이 百官을 거느리고 쉼 안의 뜰에 나아가서 임금이나 왕대비 등에게 중대한 사안의 시행이나 시행의 중지 등을 청하는 것을 庭請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임금이나 왕대비 등에게 올리는 啓辭를 庭請啓辭라고 한다.⁷⁹⁾世子나 世孫이 庭請을 할 경우에는 文任 중에서 庭請啓辭를 지을 사람을 선발하여 짓도록 하였다.⁸⁰⁾世子나 世孫이 庭請을 하기 위해 百官을 거느리고 昌德宮의 正殿인 仁政殿으로 나오면 禮房 承旨가 文任이 지은 庭請啓辭를 읽은 뒤에世子나 世孫에게 전해주고,世子나 世孫이 이를 받아 승전색에게 전해주어 入啓하도록 하였다.⁸¹⁾庭請啓辭에 대한 임금의 批答이 내리면世子나 世孫이 직접 받아 禮房 承旨에게 주어 읽도록 하였다.⁸²⁾

庭請啓辭는 임금이나 왕대비 등에게 尊號를 올리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도록 청할 경우, 임금이나 왕대비 등에게 進宴을 베풀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도록 청할 경우, 역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할 경우, 國喪 등을 당하여 疏食하는 임금에게 건강을 위해 수라를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청할 경우 등에 올렸다. 庭請啓辭는世子나 世孫 또는 大臣이 조

78) “吏批獨政啓辭入來。豐之曰：‘殿座時，若值開政，而有稟達之事，則政官入侍啓請，自是規例。而今日獨政啓辭，不爲筵達，書入啓辭，事極未安。吏曹參議黃昇源推考何如?’上曰：‘依爲之。’”(口承政院日記口正祖 9年(1785) 8月 10日).

79) 口銀臺便攷口 吏房攷 王世子率百官庭請·百官庭請.

80) 口銀臺條例口 吏攷 王世子庭請.

81) 口六典條例口 吏典 承政院 儀節.

82) 위의 책.

정의 百官들을 거느리고 올렸을 뿐만 아니라 宗親들이 올리기도 하였고,⁸³⁾ 王子가 宗親과 三司의 관원을 거느리고서 올리기도 하였다.⁸⁴⁾ 庭請의 중지 여부는 임금이 간여할 수가 없었다.⁸⁵⁾

(2) 賓廳 啓辭

賓廳啓辭는 大臣을 비롯한 여러 관원이 궐내의 賓廳에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서 임금에게 요청할 때 올리는 啓辭이다.⁸⁶⁾ 賓廳啓辭는 庭請啓辭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올릴 수도 있고, 庭請啓辭는 올리지 않고 賓廳啓辭만 올릴 수도 있었다. 庭請啓辭와 賓廳啓辭를 모두 올릴 경우에는 賓廳啓辭를 먼저 여러 차례 올리고 난 뒤에 庭請啓辭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⁸⁷⁾ 賓廳啓辭는 주서가 賓廳에 나아가 작성한 뒤에 승전색을 청하여 入啓하였다.⁸⁸⁾ 賓廳啓辭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임금에게 올리는 啓辭이지만, 世子나 世孫 등도 참여하는 庭請啓辭에 비하면 다소 격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庭請啓辭를 올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賓廳啓辭도 올리지만, 賓廳啓辭를 올리는 사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庭請啓辭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賓廳啓辭나 庭請啓辭를 올릴 때에는 사안에 따라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나아가서 啓辭를 처리하였다.⁸⁹⁾

賓廳啓辭는 庭請啓辭와 동일한 사안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前代 임금을 世室로 정할 것을 청할 경우, 諡號를 개정할 것을 청할 경우, 임금의 거처를 옮기도록 청할 경우, 功臣子孫의 代數를 정하는 문제, 宗廟에 配享할 신하를 정하는 문제, 卜相의 문제, 文衡圈點의 문제, 勅使의 영접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올렸다. 賓廳啓辭나 庭請啓辭는 신하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이지만 때로는 왕대비나 慈宮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에는 啓辭를 올리도록 임금의 독려를 받기도 하였고,⁹⁰⁾ 啓辭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않으면 임금이 빨리 올

83) “宗班庭請啓曰。”(口承政院日記口 英祖 28年(1752) 2月 24日).

84) “答崇善君率諸宗、三司庭請啓辭曰。”(口承政院日記口 顯宗 15年(1674) 3月 11日).

85) “庭請之止與不止，自上不必俯問，下亦不可議矣。”(口承政院日記口 英祖 16年(1740) 閏6月 4日).

86) “院相李光佐，率二品以上，詣賓廳啓曰。”(口承政院日記口 英祖 卽位年(1724) 9月 6日).

87) “今日則先爲賓廳啓辭，明日欲設庭請矣。以前規言之，則賓廳啓辭，累次爲之，然後乃設庭請。”(口承政院日記口 英祖 卽位年(1724) 12月 29日); “如此事例，兩司至三司伏閣，大臣率二品以上，賓廳啓辭，最後率百官庭請矣。”(口承政院日記口 英祖 5年(1729) 2月 28日); “殿下終不賜答，則臣等明日將爲賓廳啓辭，三日後又將爲百官庭請，其後亦有可爲事矣。”(口承政院日記口 英祖 21年(1745) 9月 10日).

88) “賓廳會議時，承旨、史官進去。單子大臣親書，啓辭注書書之，請承傳色入啓。判付後，仍爲奉安于啓板上，招致禮郎傳授之意啓辭。”(口六典條例口「吏典 承政院 請牌」); “上曰，賓廳啓辭，使注書書之以入，事體重矣。”(口承政院日記口 英祖 6年(1730) 2月 3日).

89) “賓廳、庭請、兒房啓辭，隨其事，該房進去。”(口六典條例口 吏典 承政院 院規).

90) “其在尊事面備典禮之道，先爲賓啓，次行庭請，亦是節目間不可已之事。卿等自今日始爲賓廳啓辭，過三日後，仍爲庭請爲可。”(口承政院日記口 正祖 17年(1793) 11月 19日).

리라고 독촉하기도 하였다.⁹¹⁾

(3) 院議 啓辭

院議啓辭란 승정원의 승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서 임금에게 보고하거나 요청할 때 올리는 啓辭를 말하는 것으로,⁹²⁾ 임금의 지시에 의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승정원에서 자발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임금의 명으로 승지들이 어느 사안에 대해 의논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것이고,⁹³⁾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임금의 처분이나 당시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승지들이 자발적으로 의논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서 임금에게 요청하는 것이다.⁹⁴⁾

院議啓辭의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가 차지하는데, 그 내용은 역적의 처벌, 親祭의 중지, 임금의 환궁, 王命의 還收 등을 청하거나, 氣象의 災異를 만나 임금에게 권면하는 것 등이다. 繳還을 할 경우에도 원의계사를 올렸는데, 이때에는 앞서 내린 王命을 승전색을 통해 捧入하였다.⁹⁵⁾ 院議啓辭도 넓게는 政院 啓辭의 일부이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 承政院의 승지들이 의견을 모아서 연명으로 올린다는 점에서 담당 승지가 개별적으로 올리는 일반적인 政院 啓辭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91) “上曰：‘賓啓之書入，何尙晚也？促書以入可也。’賤臣承命出，待畢書還入進伏。賓廳請承傳色，奉入啓辭。”

92) □六典條例□에는 10월에 번개가 치면 院議啓辭를 올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院議啓辭를 올릴 때에는 동참한 승지들이 연명한 것으로 보인다. 公除 기간에는 院相이 승정원에 나와서 國務를 총괄하였는데, 이러한 시기에 院議啓辭를 올릴 경우에는 院相도 院議啓辭에 연명하였다. “十月，……是月有雷異，則院議啓辭。”(□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月令); “撤直前坐直，院議啓辭，亦爲聯名<廳座時，坐於都承旨之座，都承旨坐於東壁之首。>”(□銀臺條例□ 吏攷 院相); “左承旨徐榮輔疏曰：‘……如有院議啓辭，必要聯書臣名。’”(□承政院日記□ 正祖 18年(1794) 9月 1일).

93) “政院啓曰：‘以吏曹判書鄭世規筭子，傳曰，本院議啓事，命下矣。判書病勢如彼，參判、參議皆未差，此係大段變通，臣等亦未知如何以處之則可也。’”(□承政院日記□ 孝宗 3年(1652) 7月 22일).

94) “院議啓辭：‘伏以嗚呼！古今天下，寧有國有賊君有讎，而不誅不討，遷延時日，彌四載戴一天，而玩愒爲事者乎？’”(□承政院日記□ 正祖 3年(1789) 3月 15일).

95) “該府啓言：‘罪人洪明浩處問，尹永僖處分傳教，若欲繳還，則固當請承傳色奉納。而爲一院之長，乃敢付之么麼司謁，視若尋常文書之循例入啓者然。格例之墮破，猶屬餘事，其蔑紀綱壞國法，更無餘地。’”(□日省錄□ 正祖 16年(1792) 11月 9日).

V. 啓辭의 처리 절차

조선시대 君臣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는 승정원을 통해 出納하였다. 啓辭도 승정원을 통해 임금에게 올리고 승정원을 통해 결과를 통보받았다. 아래에서는 啓辭의 처리 절차를 啓辭의 작성 및 전달, 啓辭의 入啓, 啓辭의 裁決, 啓辭의 결과 통보 및 보관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啓辭의 작성 및 전달

啓辭는 兒房啓辭나 非兒房啓辭를 막론하고 모두 啓辭紙에 작성하였는데,⁹⁶⁾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의 차이는 啓辭의 작성과 전달 과정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衙門에서 啓辭를 작성하여 승정원에 전달하는 과정을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非兒房啓辭 중 特定啓辭는 앞에서 처리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啓辭는 대부분 非兒房啓辭가 차지하며, 非兒房啓辭 중에서도 承政院, 藥房, 兩司, 吏批와 兵批 등 특정 아문이나 기구의 啓辭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非兒房啓辭는 원칙적으로 해당 아문에서 啓辭의 草本을 작성한 뒤에 승정원의 주서가 正書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非兒房啓辭 중 兩司의 啓辭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銀臺條例□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兩司가 傳啓할 때에는 승지와 사관이 臺廳에 나가 맞아서 받아온 뒤에 주서가 正書 하되, <新啓는 頭籤을 붙여 추가해서 들고, 지운 부분에는 傍籤을 붙인다.> 낮일 경우에는 時를 써넣고 밤일 경우에는 更을 써넣어 승전색을 통해 入啓한다. 啓辭에 대한 批答이 내리면 승지와 사관이 또 臺廳에 나가서 批答을 전해준다. <원래의 啓辭는 도로 封入하여 新啓는 잘라내어 傳教軸에 붙인다. ○ 승정원에 있는 승지가 모두 臺諫의 啓辭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臺廳에 나가 만나지 않고 사관만 나아가되, 啓辭는 臺諫이 스스로 써서 직접 승전색에게 전해준다.> 모두 하루에 재차 啓辭를 올리지는 못한다.⁹⁷⁾

96) 啓辭紙로는 草注紙, 楮注紙, 厚白紙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그보다 품질이 좋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光海君日記□ 元年(1609) 4月 23日.

97) “傳啓時, 承史出接臺廳受來, 注書正書, <新啓付頭籤添入, 抹去處, 付傍籤.> 晝則填時, 夜則填更, 以承傳色入啓. 批下, 承史又往傳批. <原啓還爲封入, 新啓割付傳教軸. ○ 在院承旨俱有嫌臺啓, 不爲

위의 내용을 통해 臺諫의 啓辭는 臺諫이 草本을 작성하여 승지와 사관에게 전해지면 주서가 正書하되, 승지가 혐의 때문에 臺廳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臺諫이 스스로 啓辭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臺諫이 승정원으로 나가서 啓辭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승지와 사관이 臺廳에 나와서 받아가되, 승지가 혐의 때문에 臺廳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臺諫이 직접 啓辭를 승전색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⁸⁾ 臺諫의 啓辭뿐만 아니라 藥房의 啓辭도 藥房에서 草本을 먼저 작성한 뒤에 주서가 藥房에 와서 正本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⁹⁹⁾ 더욱이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入啓할 수 있는 승정원의 啓辭는 위의 사례로 볼 때 주서가 작성하고 승전색을 청하여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吏批 政事와 兵批 政사가 있을 때에는 승지와 주서가 吏批 政廳과 兵批 政廳에 참여하였으므로,¹⁰⁰⁾ 吏批와 兵批의 啓辭도 주서가 작성하여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政事を 연 시기가 殿座할 시기와 서로 겹칠 때에는 政廳에 나아간 승지가 啓辭를 직접 가지고 가서 入啓하기도 하였다.¹⁰¹⁾ 奎章閣은 正祖 때에 설치된 아문으로 草記와 啓辭를 모두 사용하였는데,¹⁰²⁾ 奎章閣의 啓辭도 兩司와 承政院의 전례에 따라 奎章閣에서 승지와 승전색을 청하여 올렸다.¹⁰³⁾

兒房啓辭는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아문의 首長이 승정원의 兒房에 직접 나아가 啓辭를 바치는 점으로 보아 非兒房啓辭와 달리 본 아문에서 곧바로 정본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兒房啓辭를 승정원에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口銀臺條例口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2품 이상이 兒房啓辭를 전달할 때에는 啓辭를 가지고 온 관원이 승정원의 主壁 및 東壁·西壁과 서로 절을 한 뒤에 승지가 나와 자리하면 啓辭는 이를 가지고 온 관원이

出接, 只史官進去, 而啓辭臺諫自書, 直傳承傳色。> 竝不得一日再啓。”(口銀臺條例口 刑攷 臺諫).

98) 臺諫이 啓辭를 직접 승전색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승지가 臺諫의 啓辭에 대한 혐의 때문에 승정원을 비우고 모두 나간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口承政院日記口 英祖 元年(1725) 3月 8日.

99) “臣於藥房問安時, 克祿以上注書來書啓辭, 而辭草纔出, 旋即正書, 其草翰之速, 殆若神矣。”(口承政院日記口 英祖 20年(1744) 7月 8日); “藥房啓辭及凡舉條傳旨, 注書之親自書之, 卽流來古例也。”(口承政院日記口 英祖 49年(1773) 1月 21日).

100) “藥房與政廳, 上注書進去”(口六典條例口 吏典 承政院 堂后).

101) “開政時, 若值殿座, 則政廳啓辭, 政官入侍, 出舉條, 或政廳承旨持啓辭入奏. 望筒亦不得呼別監及司謁, 承傳色入之.<啓辭及望筒, 政廳承旨親持入稟事, 定式.> 政廳承旨書啓政官之進不進.”(口銀臺便攷口 吏房攷 政事).

102) “奏啓有四, 一曰草記, 二曰啓辭, 本閣有舉行者, 或以草記或以啓辭稟旨.”(完成本 口奎章閣志口 卷2 院規 奏啓).

103) “此後本閣, 凡有請罪之事, 必以啓辭請來承旨請承傳色傳啓.”(口承政院日記口 正祖 5年(1781) 3月 21日); “至於處所, 則政院、臺諫、藥房之啓辭, 皆於本所爲之, 則本閣之獨行於他處者, 規例或涉斑駁, 體貌亦似不尊, 處所以本院爲定何如?”(口承政院日記口 正祖 5年(1781) 3月 21日).

직접 승전색에게 전달한다.¹⁰⁴⁾

각 아문에서 兒房啓辭를 작성한 뒤에는 아문의 首長이 직접 승정원의 兒房으로 나아가서 바쳤는데,¹⁰⁵⁾ 提調衙門의 경우 首長인 提調의 품계는 대부분 2품이었다. 한편으로는 승정원에 啓辭를 전달하는 관원이 승지에게 예를 행하면 승지들은 答拜를 하지 않고, 종2품에 대해서만 자리를 약간 옮겨 손을 들어 예를 표했다는 故事도 보인다.¹⁰⁶⁾

2. 啓辭의 入啓

승정원에 전달된 각 아문의 啓辭는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처분 중 한 가지 처분을 받았다. 첫 번째 처분은 啓辭의 문서 형식이나 내용, 入啓 시기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승전색을 통해 임금에게 올리는 것으로, 이를 入啓라고 하였다.¹⁰⁷⁾ 啓辭는 兒房啓辭나 非兒房啓辭를 막론하고 承政院을 거쳐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였는데, 都承旨가 승전색을 청하여 啓辭를 전달할 때에는 모든 승지가 나와서 자리하였다.¹⁰⁸⁾ 啓辭를 전달 받은 승전색이 임금에게 啓辭를 늦게 전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¹⁰⁹⁾ 入啓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啓辭를 入啓한 경우에는 승지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¹¹⁰⁾ 이미 入啓한 啓辭에 대해 임금이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¹¹¹⁾

두 번째 처분은 啓辭를 즉시 入啓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승정원에 보류해 두었는데, 이를 留院이라고 하였다.¹¹²⁾ 啓辭의 留院은 前王 등의 忌辰日이나 忌辰을 맞아 齋戒하는 경우, 産室廳을 설치한 경우, 朝市를 정지한 경우처럼 문서를 入啓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승정원에서 판단하여 실행하였다. 그 외에 임금의 명에 의해서 啓辭를 留院

104) “二品以上兒房啓辭時, 客與主壁及東西壁相拜後, 諸承旨出坐, 啓辭則客直傳于承傳色。”(口銀臺條例口故事).

105) 주) 16 참조.

106) “呈辭或啓辭或密符受納或聽傳教時, 行拜禮於主壁及東西壁, 則承旨無答拜, 而只於從二品小離席前舉手。”(口銀臺條例口故事).

107) “吏曹判書李天輔四牌, 何以爲之啓辭, 昨日入啓, 姑未批下。”(口承政院日記口 英祖 27年(1751) 3月 7日).

108) “都令請承傳色傳啓辭時, 東西壁皆出坐。”(口銀臺條例口故事).

109) “汝雖自鄉上京, 爲中官螟蛉, 豈沐猴而冠乎? 再昨啓辭, 豈可今始入啓耶?”(口承政院日記口 英祖 51年(1775) 3月 18日).

110) “疏筭既有收殺後捧入之命, 則豈可爲此啓辭乎? 當該承旨竝遞差。”(口承政院日記口 正祖 16年(1792) 1月 28日).

111) “臺閣上啓辭, 人主雖不可使改, 而此句語則改之可也。”(口承政院日記口 英祖 元年(1725) 11月 28日).

112) “翼謦曰: ‘漫文書留院中, 臺啓亦入於其中乎?’ 上曰: ‘漫公事既已留院, 臺諫焉敢入啓辭?’”(口承政院日記口 英祖 47年(1771) 7月 27日).

하기도 하였는데,¹¹³⁾ 때로는 임금의 불만을 표시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留院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英祖의 경우에는 寧陵에 行幸하는 것을 신하들이 반대하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公事를 留院하도록 명하기도 하였고,¹¹⁴⁾ 臺諫이 올린 啓辭의 내용을 당파적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公事를 留院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¹¹⁵⁾ 留院했던 啓辭는 入啓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되어 入啓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入啓와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 처분은 啓辭의 문서 형식이나 내용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啓辭를 해당 官司에 돌려주었는데, 이를 還給이라고 하였다.¹¹⁶⁾ 啓辭를 入啓할 것인지 아니면 還給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승정원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승정원에서 임금의 뜻을 물어본 뒤에 결정하기도 하였다.¹¹⁷⁾ 승정원에서 啓辭를 入啓한 뒤에 誤字가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여 올렸으며,¹¹⁸⁾ 이럴 경우에 해당 관사의 관원과 捧入한 승지는 처벌을 당하기도 하였다.¹¹⁹⁾ 승정원에서 臺諫의 啓辭를 還給한 경우에는 승지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두고 공방이 있기도 하였다.¹²⁰⁾

3. 啓辭의 裁決

임금에게 入啓된 啓辭도 세 가지 중 하나의 처분을 받았다. 첫째 처분은 啓辭를 裁決하는 것으로, 元文書에서 확인하였듯이 啓辭의 말미에 批答을 적어 내렸다.¹²¹⁾ 啓辭에 대한 裁決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승지가 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의 裁決을 받아 승전색이 승정원에 전달하고,¹²²⁾ 승지가 입시했을 때에는 승지가 직접 임금의 비답을

113) “朝者見藥房啓辭，則不爲分明，批答則字畫尤大，而亦不分明。除緊急公事外，其餘公事，姑爲留院。”(□承政院日記□ 肅宗 43年(1717) 7月 17日).

114) □承政院日記□ 英祖 6年(1730) 2月 3日·4日·5日·6日.

115) □承政院日記□ 英祖 20年(1744) 8月 29日.

116) “臺閣啓辭，事體至重，喉司職責，出納惟允。再昨臣之詣臺傳啓也，當該承宣，既已受入之後，謂有院規，又欲還給。”(□承政院日記□ 英祖 13年(1737) 閏9月 10日).

117) “此避嫌所當還出給，而既有侵斥本院之語，則本院亦不敢任意退却，何以爲之？敢稟。”(□承政院日記□ 肅宗 16年(1690) 5月 15日).

118) “周鎖曰：‘問安啓辭中，膈候當改以滯氣矣。’明履曰：‘啓辭中有眩氣之氣字，似當以滯候爲辭矣。’上曰：‘然矣。滯氣是本症，依所達爲之可也。’”(□承政院日記□ 英祖 24年(1748) 8月 11日).

119) “修撰李鼎運，在京纔已違牌，則今於副校理李鼎德下諭草記，書以鼎運，已極不察。且於校理李顯靖下諭，又以他名書之。玉堂啓辭，事體不下於府院之啓，而有此前所未聞之舉，所失非細。入直玉堂，並罷職。承宣之瞭然捧納，亦難免溺職，遞差。姓名差誤，勢難賜批，此啓辭勿施。在家諸玉堂，並牌招，推移入直，啓辭更爲修整以入。”(□承政院日記□ 正祖 10年(1786) 4月 21日).

120) □承政院日記□ 正祖 15年(1791) 9月 19日.

121) “賓廳請承傳色奉入啓辭，上命弘遠書批答曰。”(□承政院日記□ 正祖 18年(1794) 12月 9日).

받아 적었다.¹²³⁾ 藥房의 問安啓辭나 臺諫의 傳啓 등은 해당 관원이 입시하여 직접 아뢰기도 하였다.¹²⁴⁾ 啓辭에 대한 비답을 임금이 내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하가 속히 내려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¹²⁵⁾ 임금이 비답을 내리고 난 뒤에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변경한 비답으로 다시 내리기도 하였다.¹²⁶⁾

두 번째 처분은 入啓한 啓辭를 임금이 내려주지 않고 보관하는 것으로, 이를 留中이라고 하였다.¹²⁷⁾ 임금이 啓辭를 留中하는 이유는 留院과 마찬가지로 啓辭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행한 경우가 많았다.¹²⁸⁾ 이럴 경우에는 비답을 내려주지 않았고, 신하와의 갈등이 뒤따르게 되었는데, 심할 경우에는 啓辭를 불에 태워버리거나 불에 태워 재를 내려주기도 하였다.¹²⁹⁾ 이와는 반대로 임금이 啓辭의 내용을 칭찬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留中하는 경우도 있었다.

本院의 啓辭에 대해 답하기를, “신척하고 격려하는 하교로 인하여 절실히 권면하고 경계하였으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내가 어찌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原本은 留中하여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다.” 하였다.¹³⁰⁾

위와 같은 이유로 留中한 경우에는 啓辭만 留中하고 批答은 정상적으로 내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¹⁾

세 번째 처분은 啓辭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裁決하지 않고 돌

122) “藥房啓辭批答, 承傳色誤傳, 而不卽提稟, 當該承旨推考。”(口承政院日記口 正祖 10年(1786) 5月 8日).

123) “仍命書藥房啓辭批答曰。”(口承政院日記口 英祖 45年(1769) 9月 10日).

124) “姑爲停講, 先陳啓辭可也。”(口承政院日記口 英祖 3年(1727) 7月 13日).

125) “藥房啓辭, 尙未下批. 此則當出朝報, 伏望速爲下批何如?”(口承政院日記口 景宗 3年(1723) 8月 18日); “藥房、政院啓辭, 願賜批答。”(口承政院日記口 英祖 16年(1740) 5月 24日).

126) “初批答中, 有遺漏者, 以今下批答頒布。”(口承政院日記口 英祖 23年(1747) 12月 23日).

127) “政院啓辭原本留中。”(口承政院日記口 英祖 10年(1734) 1月 2日).

128) “以政院、玉堂竄配傳教反汗啓辭, 傳于趙衍德曰: ‘焉敢若此乎? 原啓已留中, 更無敢煩陳.’”(口承政院日記口 正祖 12年(1788) 3月 12日); “以三司伏閣再啓, 答曰: ‘勿煩. 啓辭留中.’”(口承政院日記口 正祖 15年(1791) 12月 15日).

129) “臺閣之所謫傳者, 應文而已; 殿下之所預備者, 例批而已. 有或留中而不下, 引火而燒去.”(口承政院日記口 正祖 13年(1789) 11月 21日); “院議啓辭, 付丙還下.”(口承政院日記口 正祖 10年(1786) 12月 25日).

130) “答本院啓辭曰: ‘將因飭勸之教, 勉戒切實, 深用嘉之, 可不猛省焉? 原本留中, 以爲盤盂之銘.’”(口承政院日記口 英祖 10年(1734) 1月 2日).

131) “啓辭入啓於當日申時入侍時, 而原本留中, 批答則命承宣呼寫以下.”(口承政院日記口 英祖 32年(1756) 10月 5日).

려주는 것으로, 이를 還給이라고 하였다.¹³²⁾ 啓辭의 내용이 임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나 啓辭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도 啓辭를 還給하였다.¹³³⁾ 임금이 啓辭를 還給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하들이 請對하거나 명령을 거두어주기를 요청하였다.¹³⁴⁾ 임금이 啓辭를 還給하였는데도 신하가 다시 올릴 경우에는 啓辭를 洗草하거나 불에 태우는 등 점차 수위를 높여 처분하기도 하였다.¹³⁵⁾ 이렇게 보면 임금이 啓辭를 환급하는 방식도 4가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승정원에서 入啓한 啓辭를 그대로 還給하는 것이고, 둘째는 啓辭를 休紙로 만들어서 還給하는 것이며,¹³⁶⁾ 셋째는 啓辭를 洗草해서 還給하는 것이고, 넷째는 啓辭를 불에 태워서 還給하는 것이다. 승지의 잘못으로 啓辭를 還給할 경우에는 통상 이를 捧入한 승지에 대한 처벌이 뒤따랐다.¹³⁷⁾

임금에게 입계된 啓辭는 이처럼 세 가지 처분 중 한 가지 처분을 받았다. 世子나 世孫이 代理聽政을 하게 되면 啓辭도 世子나 世孫의 裁決을 받았다.¹³⁸⁾ 世子가 代理聽政할 때 世子나 世孫에게 올리는 啓辭는 達辭라고 불렀다.¹³⁹⁾

4. 啓辭의 결과 통보 및 보관

啓辭에 대해 내린 批答은 승전색을 시켜 승정원에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승전색이 批答을 가지고 나오면 승지들은 나가서 승전색을 맞이하였다.¹⁴⁰⁾ 각 官司의 啓辭는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고 승전색을 통해 批答을 전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玉堂과 臺諫의 啓辭를 入啓할 때 長官이 없으면 사알을 통해 啓辭의 草本을 먼저 入啓하고 批答은 승전색을 통

132) “此啓辭, 休紙還給。”(□承政院日記□ 正祖 17年(1793) 12月 27日).

133) “以本院啓辭, 傳于申晚曰: ‘非承傳色可傳者, 還給。’”(□承政院日記□ 英祖 16年(1740) 5月 24日); “上曰: ‘藥房請對啓辭, 緣何爲之耶?’ 衍德曰: ‘欲爲承候爲之云矣。’ 上曰: ‘予方善攝, 勿爲過慮, 卽爲退去事, 傳諭于都提調, 此啓辭還給以來。’”(□承政院日記□ 正祖 11年(1787) 12月 12日).

134) □承政院日記□ 正祖 15年(1791) 12月 14日; □承政院日記□ 正祖 15年(1791) 9月 19日.

135) “此啓辭爲先還給。明日若爲之, 則加一等當洗草。又或爲之, 則更加一等當付丙。”(□承政院日記□ 正祖 18年(1794) 8月 29日).

136) 주) 132 참조.

137) “何爲啓辭乎? 啓辭還出給。啓辭承旨推考, 連爲催促。”(□承政院日記□ 正祖 6年(1782) 6月 27日); “政院之不爲查實, 徑先啓辭, 大是疎忽, 爾則推考。此啓辭還給。”(□承政院日記□ 正祖 11年(1787) 1月 19日).

138) “王世子聽政節目: ‘……凡筭疏及啓辭、藩閫狀聞、各司啓辭, 亦依丁酉節目入達東宮, 而狀聞及各司草記中事係重大有難自決者, 稟裁大朝事, 下令。’”(□承政院日記□ 英祖 25年(1749) 1月 27日).

139) “王世子聽政節目: ‘……啓辭稱達辭。’”(□承政院日記□ 英祖 25年(1749) 1月 27日).

140) “又教曰: ‘承傳色傳批答之時, 諸承旨皆出迎, 自是常法。而昨夜承傳色之下政院也, 承旨皆爲鼾睡, 只有一承旨之出迎, 史官亦不爲禮數云。政院事, 萬萬駭然矣。’ 晚秀曰: ‘未及聞承傳色下來之望, 不得出迎, 惶悚無地矣。’”(□承政院日記□ 正祖 21年(1797) 1月 14日).

해 전달 받기도 하였다.¹⁴¹⁾ 兩司의 啓辭에 대해 내린 임금의 批答은 승지가 臺廳에 나가서 전해주었으며, 원래의 啓辭는 도로 들여와서 新啓는 傳教軸에 붙여 보관하였다.¹⁴²⁾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臺諫의 啓辭와 六曹의 草記는 本院에 보존해 두기 때문에 本院에서 으레 傳旨를 捧入한다.¹⁴³⁾

各 官司의 草記와 臺諫의 啓辭는 文書가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제 때에 수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빠뜨리거나 잘못될 우려가 없다.¹⁴⁴⁾

이상과 같이 臺諫의 啓辭를 승정원에 보관했던 것으로 보아 다른 衙門의 非兒房啓辭도 승정원에 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⁵⁾

VI. 맺음말

이상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啓辭에 대해 살펴보았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承政院에서 君臣의 말과 글, 動靜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으로, 원래는 조선 초기부터 작성이 되었으나 현재는 仁祖 이후의 기록만이 남아있다.

141) “玉堂與臺諫，事體稍別。凡啓辭，若無長官，則一員先呈啓辭於色承旨，以司謁入啓，批答則以承傳色下之，然後俱入廳中承受，明在本院式例。再明夕，玉堂官員，以其退在依幕，不參從班之失，來呈待罪啓辭，而強令本院入直請承傳色。本院據例爭執，而不得遂，以承傳色入啓。”(□承政院日記□ 孝宗 5年(1654) 3月 6日).

142) 주) 97 참조.

143) “大概臺諫啓辭、各曹草記，則留置本院，故本院例爲捧傳旨”(□承政院日記□ 孝宗 3年(1652) 9月 29日).

144) “如各司草記、臺諫啓辭，則文書俱在，雖不能趁即修正，可無遺誤之患。”(□承政院日記□ 肅宗 10年(1684) 3月 27日).

145) 啓辭紙를 한 번 보고 나서 휴지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기사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正書한 계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啓草 즉 啓辭의 草本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규장각에 남아있는 啓草를 보면 뒷면에 다른 記事가 낙서되어 있으나, 비답이 실린 正書한 계사는 그렇지 않다. “各司所用，自有楮注、草注紙，而況如啓辭紙，一覽之後，便爲休紙，何用濫費過厚之紙哉?”(□光海君日記□ 元年(1609) 4月 23日).

啓辭는 君臣의 글 중 中央官府의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던 中央官府文書의 일종으로, 草記와 함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관부문서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啓辭의 원래 의미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었으며, 文書로써의 啓辭는 中宗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草記가 사용되기 시작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啓辭도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都提調가 있는 아문에서 구두로 아뢰던 것을 草記로 올리게 되자 都提調가 없는 衙門에서는 임금에게 상달할 때 아문의 首長이 승정원의 兒房에 나가서 啓辭를 올리도록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구두로 전하던 啓辭가 문서로 변한 것으로, 이러한 啓辭를 올릴 때에는 아문의 首長이 승정원의 兒房에 나아가지 않고 本衙門에서 승지와 승전색을 청하여 직접 올리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兒房啓辭라고 부르고 후자를 非兒房啓辭라고 불렀다.

兒房啓辭는 조선시대의 法典 등을 비롯한 文獻에서 文書式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현재 남아있는 문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兒房啓辭의 양도 非兒房啓辭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草記가 사용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신하가 임금에게 구두로 아뢰던 방식에서 문서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兒房啓辭도 문서의 일종으로 보았다. 그러나 兒房啓辭가 문서라면 어떠한 형식의 문서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더 많은 文獻과 古文書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非兒房啓辭는 文獻에 文書式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승정원일기□에도 승정원, 藥房, 兩司, 吏批와 兵批와 같은 특정 官司나 기구에서 올린 啓辭가 다수 실려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啓辭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써의 성격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었고,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中央官府文書 중 啓辭가 차지하는 비중과 용도도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을 통한 啓辭의 受發 과정과 임금의 裁決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문서로써의 啓辭를 이해하고 古文書의 일부로써 啓辭를 분류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啓辭는 草記와 함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관부문서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문서를 사용하는 아문에 대한 기준도 각각 달랐다. 啓辭와 草記는 둘 다 中央官府에서만 사용하는 문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두 문서를 사용하는 아문이 서로 다르다는 차이점도 있다. 이처럼 啓辭는 草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두 문서의 특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啓辭와 草記의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啓辭를 사용하는 아문과 草記를 사용하는 아문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中央官府 중에는 草記와 啓辭를 둘 다 사용하는 아문이 있는데, 이때 그 사용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啓辭와 草記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草記와 啓辭의 원문서를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官撰史料에 기록된 草記와 啓辭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승정원일기□에는 다른 官撰史料와 달리 문서의 종류에 따라 기록 형식도 달라지고 있으므로 □승정원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¹⁴⁶⁾ 그렇게 함으로써 두 문서의 특징과 용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히기로 하겠다.

○ 투고일 : 2010년 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6월 30일

146) 中央官府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대표적인 문서로는 草記, 啓辭, 啓目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승정원일기□에는 이들 문서를 구별하여 기록한 반면에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에는 이들 문서를 구별하지 않고 대부분 官司名 다음에 ‘啓曰’이나 ‘啓言’ 등으로 기록하였다.

참고문헌

자료

- 崔恒 등, □經國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金在魯 등, □續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金致仁 등, □大典通編□,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趙斗淳 등, □大典會通□,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具宅奎, □百憲摠要□, 한국역사정보시스템(<http://yoksa.aks.ac.kr>).
 具允明, □典律通補□,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承政院, □銀臺便攷□,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承政院, □銀臺條例□,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趙斗淳 등, □六典條例□,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李晬光, □芝峯類說□, 경인문화사, 1970.
 李肯翊, □燃藜室記述□, 조선고서간행회, 1912.
 金指南, □通文館志□,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朴一源, □秋官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李魯春 등, □弘文館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徐命膺 등, □奎章閣志□,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姜渭聘 등, □惠局志□,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논저

- 김건우, 「갑오개혁기 「公文式」과 公文書의 변화」, □고문서연구□ 29집, 한국고문서학회, 2006, 137~162쪽.
 김건우, 「韓國 近代 公文書의 形成과 變化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명경일, 「조선시대 啓目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준호, 「□洪武禮制□와 朝鮮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구□ 22집, 한국고문서학회, 2003, 141~167쪽.
 박준호, 「□經國大典□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집, 한국고문서학회, 2006, 111~128쪽.
 박준호,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1집, 한국고문서학회, 2007, 107~129쪽.

- 심영환, 「고문서용어 풀이 -草記-」, □고문서연구□ 20집, 한국고문서학회, 2002, 293~300쪽.
- 심재권, 「국왕 문서 ‘批答’의 연구」, □고문서연구□ 32집, 한국고문서학회, 2008, 67~92쪽.
- 연갑수, 「《日省錄》의 사료적 가치와 활용 방안」, 2004년도 민족문화추진회 정기학술회의 “朝鮮後期史의 寶庫 □日省錄□의 새로운 照明” 발표문, 서울, 세종문화회관, 2004년, 27~65쪽.
- 윤병태 · 박옥화 · 장순범,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련 敎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집, 한국고문서학회, 2007, 93~124쪽.
- 이강욱,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307~354쪽.
- 이해준, 「고문서 분류체계 시안」, □고문서연구□ 22집, 한국고문서학회, 2003, 79~118쪽.
- 임민혁, 「朝鮮時代 敎書의 作成 및 性格」, □민족문화□ 10집, 한성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9, 107~132쪽.
-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 최승희, 증보판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95.

전자자료

- 朝鮮王朝實錄□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
- 承政院日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국사편찬위원회(<http://sjw.history.go.kr>).
- 日省錄□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Abstract

A Study on Gyesa -focusing on □Seungjeongwon-Ilgi□-

Lee, KangUk

□Seungjeongwon-Ilgi□ is a book in diary format recorded by Seungjeongwon. It contains speeches, writings, and activities of kings and court functionaries. Gyesa is a type of an official document which was us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officials to make reports, requests, and inquiries to the king. In the Sillok from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Gyesa mainly conveys the general meaning of ‘words or contents of vassals statement to the king’. After Joongjong, other than the general meaning, the usages for specific documents were derived from it such as: ‘Chogi’; ‘Gyesa to be submitted at Ahbang’; and ‘Gyesa to be submitted without attending Ahbang’. This writing is focusing on the last two: ‘Gyesa to be submitted at Ahbang’; and ‘Gyesa to be submitted without attending Ahbang’.

The forms of Gyesa are given in □Kyujanggakji□ compiled in the Jeongjo period and □Eundaepyeongo□ in the Heonjong period. According to the forms stipulated in □Kyujanggakji□, Gyesa from Kyujanggak is written out in hangseo and choseo by its functionary. The beginning of it would be written in the style of being informed by the officials of Kyujanggak. It would be ended in one of the three interrogatory forms: first, the one with saying ‘how would we do?’ in the case of request; another with ‘I venture to inform you.’ in reporting; and the other with ‘I venture to inquire.’ in the case of asking. These formats can be found in the existing documents of Gyesa. At the end of Gyesa, like in Chogi, dates and government posts were not filled in, and official seals were not affixed either. The following are the features of forms of Gyesa in □Seungjeongwon-Ilgi□. In Chogi, the name of Seungji is recorded who submits the documents in order to get sanctioned by the king. Unlike Chogi, at the top of Gyesa is written the name of a government office or that of its official. Its style is also distinct from that of Chogi in respect that those who

propose Gyesa are stating directly. The king's handling of Gyesa is recorded in Jeongyo, Hahgyo, Bidap.

While Gyesa and Chogi take the largest amount of official documents in □Seungjeongwon-Ilgi□, most of the Gyesa consists of ‘Gyesa to be submitted without attending Ahbang’ from the government office headed by Dojejo. In the government's office without Dojejo, its head official attends Ahbang in person to propose Gyesa to the king, which is called ‘Gyesa to be submitted at Ahbang’. The records in □Seungjeongwon-Ilgi□ shows that ‘Gyesa to be submitted at Ahbang’ could be registered with an individual's name as well as with the name of government offices. ‘Gyesa to be submitted without attending Ahbang’ is the one that would be handed over directly from the office concerned without the head official's attending Ahbang in Seungjeongwon. It would be performed after having been asked to Seungji and Seungeonsaek. According to □Seungjeongwon-Ilgi□, some offices used Gyesa in most cases, not Chogi. Seungjeongwon, Yakbang, and Yangsa are typical examples of the offices. Besides them, Ibi and Byungbi also used Gyesa mainly. ‘Specific Gyesa’ refers to Gyesa to be submitted under the names of several people when a specified suggestion has occurred, which is also a kind of ‘Gyesa to be submitted without attending Ahbang’. ‘Jeongcheonggyesa’, ‘Bincheonggyesa’, and ‘Woneuigyesa’ represent the specific Gyesa.

‘Gyesa to be submitted at Ahbang’ would be handed in at Ahbang in Seungjeongwon by the head official from the office concerned in which the Gyesa has been written out into a formal document. In the case of ‘Gyesa to be submitted without attending Ahbang’, the office concerned makes a rough draft of Gyesa and transfers it to Seungji and Jooseo, who would make a clean copy of the draft. After the procedure, Seungeonsak would be fetched to have it sanctioned by the king. Gyesa transferred to Seungjeongwon was adjudged one of the following three: ‘to let in to be sanctioned by the king’; ‘to keep suspended at Seungjeongwon’; or ‘to return Gyesa back’. Gyesa transferred to the king also received one of the three different results: ‘to get sanctioned by the king’; ‘to keep in custody without sanctioning’; and ‘to return Gyesa back’. Bidap, the answer of the king on Gyesa, was notified to Seungjeongwon through Seungeonsak.

Keyword : Gyesa(啓辭), Gyesa to be submitted at Ahbang(兒房啓辭), Gyesa to be submitted without attending Ahbang(非兒房啓辭), government office headed by Dojejo(都提調衙門), government office headed by Jejo(提調衙門), government

office without Jejo(非提調衙門), to let in to be sanctioned by the king(入啓),
to keep suspended at Seungjeongwon(留院), to return Gyesa(還給), to keep in
custody without sanctioning(留中), Chogi(草記)